

언론중재

ISSN 2005-2952

2025 Spring Vol.174

04

FOCUS ON MEDIA

정보 신뢰의 위기와 팩트체크

56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틱톡 '블랙아웃 챌린지'와
10세 소녀의 죽음

64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인공지능 시대의
뉴스 저작권 및 공정이용 논란



언론중재

2025 Spring Vol.174

인쇄

2025년 3월 26일

발행

2025년 3월 28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 00002

발행인

김성수

편집인

김윤정

발행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044

디자인·인쇄

문화공감

편집위원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표시영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언론중재위원

FOCUS ON MEDIA

정보 신뢰의 위기와 팩트체크

1. 메타, 팩트체크를 내려놓다

— 가짜뉴스 현주소와 플랫폼의 책임

윤지원, Ph.D.

Fellow Scholar, Media Education Lab

04

2. 플랫폼 팩트체크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김경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18

3. ‘플랫폼 내 팩트체크’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한 헌법적 쟁점

조영승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연구교수

34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사건 속 법률

디지털 유산의 일신전속성

이성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48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틱톡 '블랙아웃 챌린지'와 10세 소녀의 죽음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유 외국변호사(캘리포니아 주), 백지원 변호사

56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인공지능 시대의 뉴스 저작권 및 공정이용 논란:

최근 미국 판례와 한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64

중재위원 노트

언론조정의 의미를 돌아보며: 피해구제를 넘어 언론 신뢰의 자양분으로

민영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교수

72

판례토크

다른 기사 참조, 명예훼손의 정당한 항변이 될까?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

78

해외통신원

2024 영국 사우스포트 폭동으로 본 허위조작정보의 무기화

최지현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미디어, 개발학 석사과정

86

칼럼

재난보고와 트라우마: 언론의 역할과 책임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

98



01

메타, 팩트체크를 내려놓다

— 가짜뉴스 현주소와 플랫폼의 책임

윤지원, Ph.D.

Fellow Scholar, Media Education Lab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정보 유통의 핵심 매체로 자리 잡았으나, 동시에 허위정보(가짜뉴스)가 확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메타(당시 페이스북)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은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도입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본 글에서는 메타의 팩트체크 프로그램 도입 배경부터 2025년 중단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사이에 벌어진 미국·유럽 선거에서 발생한 가짜뉴스 사례와 플랫폼들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메타가 대안으로 제시한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 모델 및 X(옛 트위터)에서 시도된 유사한 시스템의 한계를 고찰하여, 앞으로의 소셜미디어 팩트체크 방향과 민주주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 메타의 팩트체크 도입 배경

메타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플랫폼 내 허위정보(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허위정보를 퍼뜨린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특히 메타(당시 페이스북)와 X(당시 트위터)와 같은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러한 허위정보 전파의 주요 경로로 지목되었다(Gleicher, 2019). 러시아의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 Internet Research Agency, 이하 ‘IRA’)는 가짜 계정을 활용하여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고 유권자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IRA는 수천 개의 가짜 계정을 운영하며 미국 유권자들에게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정보를 퍼뜨렸다(Benkler, Faris, & Roberts, 2018).

특히, 2016년 선거에서 IRA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예를 들어, 인종 차별, 이민 문제, 총기 규제, 종교 갈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허위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특정 그룹이 상대 진영을 더욱 강하게 적대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치적 의견 게시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었으며, 대량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이에 노출되었다(Howard et al., 2018).

2017년, 미국 의회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의 대표들이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선거 개입과 허위정보 확산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U.S.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2018).

메타의 팩트체크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허위정보를 검증하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Meta Business Help Center, n.d.).

1. **허위정보 확산 방지:** 가짜뉴스와 조작된 콘텐츠의 도달 범위를 줄이고, 사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팩트체크 기관과의 협력 강화:** 독립적인 검증기관이 콘텐츠를 판별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확보한다.
3. **허위정보를 접한 사용자들에게 경고 제공:** 허위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접한 사용자들에게 해당 정보가 검증되었음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제공한다.

2. 팩트체크 기관과의 협력

메타는 팩트체크 기관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절차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특정 콘텐츠가 허위정보로 의심되면 이를 독립적인 제3자 기관에 전달한다. 이때 제3자 기관은 메타가 직접 운영하는 팩트체크 팀이 아닌, 외부의 공신력 있는 팩트체크 기관들을 의미한다. 대표 기관으로는 Politifact, FactCheck.org, The Washington Post Fact Checker(미국), Full Fact(영국), Correctiv(독일), DPA Fact Checking(독일), Les Décodeurs(프랑스) 등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Boom, The Healthy Indian Project 등을 포함한 인도 내 11개 기업, Fact Crescendo(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이 참여해 허위정보를 검증하고 있다. 남미에서는 Chequeado(아르헨티나), Agência Lupa(브라질) 등이 스페인어·포르투갈어권 지역의 허위정보를 검증한다.

한국에서는 2020년 8월부터 JTBC가 메타의 첫 번째 팩트체크 파트너로 참여해 Facebook 내 한국어 콘텐츠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허위로 확인된 콘텐츠의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Meta, 2020a). 같은 해 10월에는 AFP(Agence France-Presse)가 추가로 합류해 한국 내 팩트체크 노력을 더욱 강화했다(Meta, 2020b). 이를 통해 메타는 각 지역의 팩트체크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검토한 뒤, 허위정보로 판명된 게시물에 대해 노출 우선순위를 낮추거나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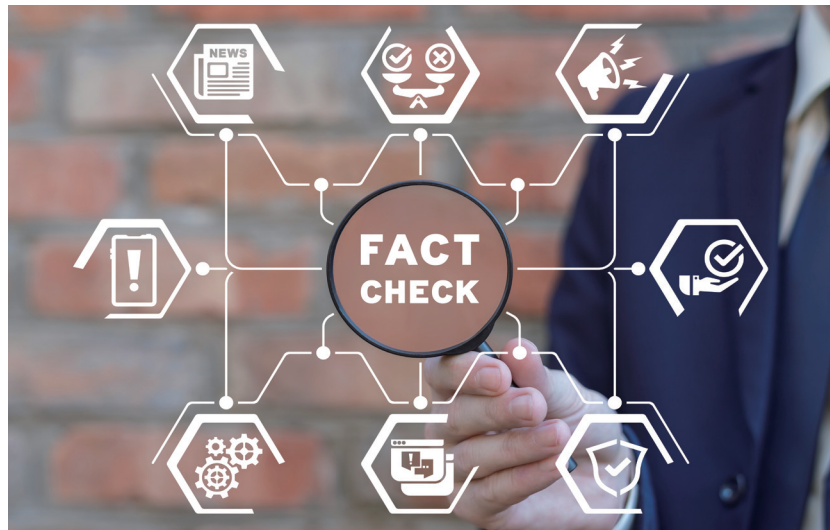
팩트체크 기관들은 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실 여부를 판별한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의 연설에서 논란이 된 발언이 사실인지 검증할 때 로이터나 AP통신과 같은 언론사가 과거 인터뷰 자료, 정책 문서, 공식 데이터베이스 등을 교차 검토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한다(Reuters, n.d.; Poynter Institute, n.d.). 검증이 완료된 정보는 메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업데이트되며, 허위정보로 확인된 콘텐츠는 뉴스피드에서 우선순위를 낮추거나 경고 메시지를 삽입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검증된 정보는 별도의 팩트체크 기사로 제작되어 게시물과 함께 링크가 제공되므로, 사용자는 직접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팩트체크 기관들은 정치·사회 분야뿐 아니라 건강·과학 이슈와 관련된 허위정보도 적극 검증한다. 예컨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이 급격히 확산됐을 때, IFCN 회원 기관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각국 보건당국의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AFP Fact Check는 “코로나19 백신이 DNA를 변형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해당 게시물에 사실확인 태그를 부착했다(AFP Fact Check, 2021). Politifact 역시 마스크 착용과 백신 효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분석해 과학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기사와 보고서를 발표했다(Politifact, 2021).

3. 선거와 관련된 허위정보 확산 및 팩트체크의 역할

3.1 2020년 미국 대선 사례

2020년 미국 대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편투표 활용이 크게



늘어난 선거였고, 이 과정에서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을 유발한다”는 음모론적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실제로 AP News와 PolitiFact, The New York Times 등 여러 언론이 대선 전후로 우편투표와 관련한 오해를 집중 조명했는데, 특히 팩트체크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잘못된 정보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AP News, 2020; Sherman, 2020; Qiu, 2021).

이에 대응하기 위해 AP Fact Check, AFP Fact Check, Reuters Fact Check, PolitiFact, FactCheck.org 등은 선거 관련 주요 쟁점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팩트체크 프로젝트’를 운영했다(AP News, 2020; Sherman, 2020). 이들은 각 주(州)의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실제 선거 통계·법률문서를 참조해 “우편투표가 대규모 선거 사기를 야기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잘못된 주장이 SNS로 급속히 확산될 경우 메타와 협력해 ‘허위정보’로 분류하거나 경고 메시지를 노출하도록 조치했다.

3.2 최근 미국 및 유럽 선거에서의 플랫폼 역할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이민·인종갈등·공중보건 등 다양한 정치적 쟁점을 둘러싸고 허위정보가 대거 유포되었으며, 메타와 X, 구글 등 주요 플랫폼들은 사전 검열보다는 “허위정보 판별 후 노출 축소” 방식으로 대

응했다. 그러나 플랫폼별 인력 감축과 알고리즘 강화 문제로 인해 검증 속도가 느려, 이미 확산된 가짜뉴스를 제때 잡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Klepper, 2022).

2024년 1월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가 X 게시글에서 “불법 체류자들의(미국) 연방 선거 투표를 막지 않고 있다. 놀랍다”고 쓴 바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것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미국법은 비시민권자의 연방 선거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선거가 사기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에 노출돼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지만 플랫폼 X에는 팩트체크 기능이 예전에 사라진 상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Rutenberg & Conger, 2024). 머스크는 또한 미국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 게시물은 5천900만회나 읽혔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어떤 형태로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 시 신분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정은, 2024). 팩트체크 기능이 없는 플랫폼의 경우 허위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허위정보 대응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을 통해 메타, X, 구글 등에 자율 규제를 권고했으나,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논쟁이 많았다(Mündges & Park, 2024). 2019년 유럽의회 선거 기간 중 이민·난민 문제와 관련된 허위정보가 대량으로 유포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었고, 일부 정치 단체가 이를 적극 활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Dennison & Zerka, 2019).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허위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국 선거관리당국과 팩트체크 기관들은 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플랫폼이 가진 방대한 영향력에 비해 대응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4. 메타 팩트체크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

메타의 팩트체크 시스템은 그동안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1. 팩트체크의 편향성과 신뢰도 논란

일부 보수적 성향의 미디어 및 정치인들은 메타의 팩트체크 기관들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더 강하게 검증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외부기관들을 통한 독립적 검증 시스템을 강조하며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메타의 팩트체커들이 좌편향되어 있다”라며, 보수 성향의 콘텐츠를 더 강하게 검증하고 삭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Walker & Gottfried, 2019). 또한 팩트체크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나올 경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52% 더 높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Reinero, Harris, Rathje, Duke, & Van et al., 2023).

2. 팩트체크의 속도와 규모 문제

팩트체크가 효과적이라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플랫폼 전체를 커버할 만큼 충분한 규모를 가져야 한다. 메타는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관련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상세 공개한 적이 없지만, 2020년 Columbia Journalism Review 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팩트체커들이 5일 동안 완료한 팩트체크는 약 70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불과했다(Bengani & Karbal, 2020). 또한 2020년 1월 한 달 동안 PolitiFact가 페이스북에서 팩트체크한 게시물은 54개였는데, 그중 단 9개만이 24시간 이내에 검증되었고, 절반 이상은 일주일이나 지나야 검증되었다. 허위정보가 이미 확산된 이후에 팩트체크가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Legum, 2020).

5. 메타 팩트체크 프로그램 종료와 반응

2025년 1월 7일, 메타의 창립자 겸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는 미국 내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공식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커버그는 “팩트체커들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플랫폼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보수 진영에서 환영받았으며,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표현의 자유

(free speech)의 승리”라고 평가했다(Miller, 2025). 반대로, 팩트체크 시스템 폐지가 오히려 허위정보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진보 성향의 정치인과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허위정보 확산을 더욱 부추길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Huo, Bond, and Allyn, 2025).

또한 팩트체크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은 메타의 새로운 정책이 허위정보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 대학교 정보 공공센터 공동 창립자인 케이트 스타버드는 “메타의 기존 팩트체크 프로그램은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 확산을 분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메타가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연구 기반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공동 창립자 빌 애디어(Bill Adair)는 “팩트체커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저커버그의 주장은 매우 문제가 있다. 팩트체크 기관들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디렉터인 엔지 드롭닉 홀란(Angie Drobnic Holan) 역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팩트체크 기관들의 보고서가 줄어들 것이다”, “팩트체크 프로그램 덕분에 음모론과 가짜뉴스 확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라고 인터뷰에서 의견을 표명했다(Huo et al., 2025).

6. 메타의 팩트체크 대안: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 도입

메타는 미국에서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대신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 모델을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메타는 “우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노트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뒤 연내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다른 국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커뮤니티 노트 모델은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의 진위를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 지성 기반의 정보 검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X에



서 시행 중인 정책과 유사하며, 사용자가 특정 게시물에 대한 보충 설명(노트)을 작성하고, 다른 사용자가 해당 노트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메타는 이를 통해 팩트체크에 대한 ‘편향성 논란’을 피하면서도, 콘텐츠 검증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사용자 주도형 검증 시스템, 다양한 관점 반영, 평가 시스템 도입, 자동화 및 AI 활용 등이 꼽힌다. 그러나 전문가 검증 없이 일반 사용자들의 평가에 의존할 경우, 허위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메타의 팩트체크 프로그램 종료가 과학적 허위정보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Roeder, 2025), 메타의 새로운 커뮤니티 기반 검증 시스템이 허위정보와 증오 발언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Katz, 2025).

7. X의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

X(당시 트위터)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주장을 담은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이 트윗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달았다(한겨레, 2020).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 폐쇄 및 강력한 규제 등 ‘큰 조치’를 검토하

졌다며 갈등 국면에 놓인 적이 있었다. 당시 트위터는 “우편 투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면서 “전문가들은 우편투표는 부정투표와 거의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X(당시 트위터) 인수 이후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선거 관련 게시물에 표시를 하는 장치를 폐지했다(김정은, 2024).

현재 X는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라는 집단 지성 기반 정보 검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원래 2021년 1월 ‘버드워치(Birdwatch)’라는 이름으로 미국 내에서 시험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용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트윗에 직접 노트를 달아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허위정보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교정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Coleman, 2021). 이후 2022년 11월, 일론 머스크 인수 이후 기존의 〈신뢰 및 안전 위원회(Trust and Safety Council)〉를 공식적으로 해체한 트위터는(The Associated Press, 2022), ‘버드워치’를 커뮤니티 노트로 공식 리브랜딩하고 이 기능의 활용을 미국 안에서 확대하기 시작했다(X, 2022).

7.1 커뮤니티 노트의 한계와 우려

X의 커뮤니티 노트는 그동안 일관성 있는 검증과 신속한 오류 수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예컨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과 관련된 허위정보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커뮤니티 노트만으로는 허위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Kao & Bengani, 2023).

Poynter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인 MediaWise의 디렉터인 알렉스 마하데반은 X가 사용자들이 작성한 커뮤니티 노트를 통해 허위정보를 집단 지성으로 검증하려는 시도가 대부분 실패했다고 분석했다(Czopek, 2023). 마하데반은 2023년에 서울에서 서울대와 Poynter의 공동 주최로 열린 The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행사에서, 커뮤니티 노트 프로그램이 15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약 133,000명의 커뮤니티 노트 작성자가 활동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까지 약 122,000개의 노트가 작성되었으나, 이 중 일반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약 10,400개(8.5%)에 불과했다.

커뮤니티 노트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다른 커뮤니티 노트 작성자들이 해

당 노트를 읽고, 인용된 정보의 출처와 제공된 정보의 맥락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 트위터의 알고리즘은 노트 작성자의 과거 행동을 분석해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고, 좌우 양쪽에서 비슷한 수의 사용자가 해당 노트를 승인할 때까지 기다린다. 즉,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른 작성자들에게도 유용하다고 인정받아야 노트가 공개되는데, 점점 더 양극화되는 정치환경에서 이런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해당 노트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장 많이 평가된 노트조차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60%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커뮤니티 노트가 공개되는 일도 발생했다. 한 예로 CNN 트윗에 “흑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통념은 데이터와 현실이 다르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으나, 이에 “64%의 흑인 아이들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다”는 부정확한 노트가 달려 며칠 동안 수백만 명에게 노출된 뒤에야 삭제되었다. 이처럼 커뮤니티 노트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명백한 허위사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동시에 책임 있는 정보 검증 사이의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Czopek, 2023).

결론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가짜뉴스 문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책임론과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메타와 여러 글로벌 플랫폼들은 팩트체크 제도를 도입하여 허위정보 확산 억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 검증 속도와 규모의 한계, 플랫폼 책임성의 공백 등 여러 과제를 안은 채 2025년 메타의 팩트체크 중단 선언에 이르렀다.

이제 메타는 ‘커뮤니티 노트’를 내세워 사용자 집단 지성에 의존하는 검증 방식을 택했지만, 전문가 기반의 빠르고 정확한 팩트체크를 온전히 대체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과학적 논란이 뒤섞일 경우, 대중 스스로가 허위정보의 진위를 판별해내기에는 시간적·정보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X의 커뮤니티 노트 역시 유사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어, 단순한 ‘집단 지성’ 모델만으로는 대규모 허위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짜뉴스 확산은 단순히 한 플랫폼의 이용 정책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과 사회적 신뢰에 직결되는 이슈다. 따라서 앞으로 소셜미디어 기업과 정부, 팩트체크 기

관, 시민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규제·자율의 균형을 모색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플랫폼 책임 강화와 지속적 연구·검증 시스템을 확충함으로써, 정보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정은. (2024, January 26). '팩트체크' 없는 엑스...NYT "머스크, 잘못된 선거 정보 퍼뜨려".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619000009?input=1195m>
- 한겨레. (2020, May 27). 트위터 팩트체크 경고에...트럼프 "폐쇄·큰 조치" 전면전 선포. *한겨레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46801.html>
- AFP Fact Check. (2021, January 22). Vaccines don't change your DNA. *AFP Fact Check*. Retrieved from <https://factcheck.afp.com/vaccines-dont-change-your-dna>
- AP News. (2020, September 17). AP FACT CHECK: Trump's big distortions on mail-in voting. Associated Press. Retrieved from <https://apnews.com/article/virus-outbreak-election-2020-ap-fact-check-elections-voting-fraud-and-irregularities-8c5db9096081591f39fe115579570b4>
- The Associated Press. (2022, December 12). Musk's Twitter has dissolved its Trust and Safety Council. *NPR News*. Retrieved from <https://www.npr.org/2022/12/12/1142399312/twitter-trust-and-safety-council-elon-musk>
- Bengani, P., & Karbal, I. (2020, October 30). Five days of Facebook fact-checking. *Columbia Journalism Review*. Retrieved from <https://www.cjr.org/analysis/five-days-of-facebook-fact-checking.php>
- Benkler, Y., Faris, R., & Roberts, H. (2018). *Network propaganda: Manipulation, disinformation, and radicalization in Americ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so/9780190923624.001.0001>
- Catalini, C. (2024, August 28). Why big tech can't solve the content moderation problem. *Forbes*. Retrieved from <https://www.forbes.com/sites/digital-assets/2024/08/28/why-big-tech-cant-solve-the-content-moderation-problem/>
- Coleman, K. (2021, January 25). Introducing Birdwatch, a community-based approach to misinformation. *X Blog*. Retrieved from https://blog.x.com/en_us/topics/product/2021/introducing-birdwatch-a-community-based-approach-to-misinformation
- Czopek, M. (2023, June 30). Why Twitter's Community Notes feature mostly fails to combat misinformation. *Poynter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s://www.poynter.org/fact-checking/2023/why-twitters-community-notes-feature-mostly-fails-to-combat-misinformation/>
- Dennison, S., & Zerka, P. (2019). The 2019 European election: How anti-Europeans plan to wreck Europe and what can be done to stop it.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Retrieved from https://ecfr.eu/special/the_2019_european_election/
- Gleicher, N. (2019). Removing coordinated inauthentic behavior from Russia. *Meta Newsroom*. Retrieved from <https://about.fb.com/news/2019/01/removing-cib-from-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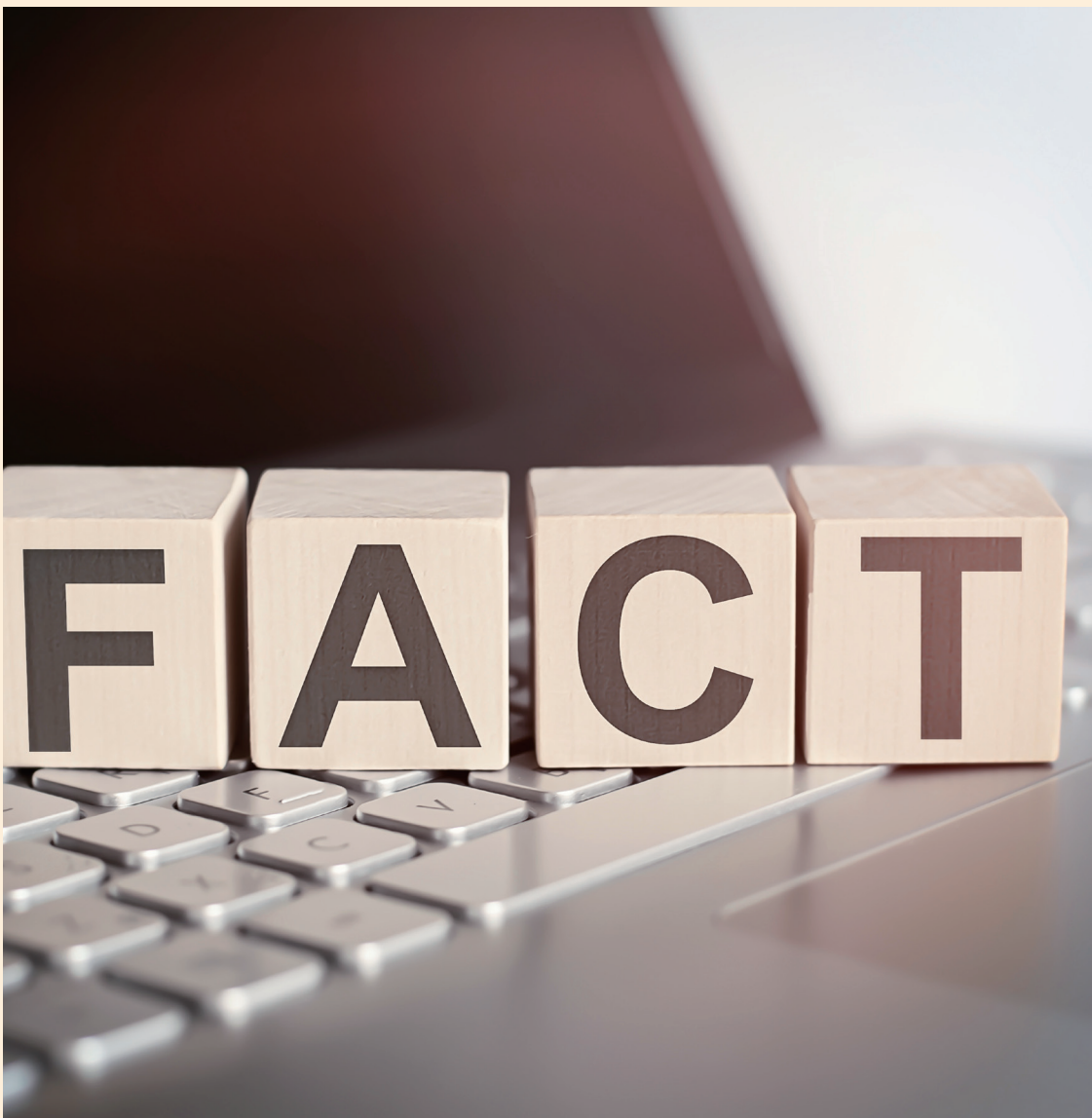
- Howard, P. N., Ganesh, B., Liotsiou, D., Kelly, J., & François, C. (2018). *The IRA, Social Media and Political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2012–2018*. Project on Computational Propaganda. Retrieved from <https://comprop.oii.ox.ac.uk/wp-content/uploads/sites/93/2018/12/The-IRA-Social-Media-and-Political-Polarization.pdf>
- Huo, J., Bond, S., & Allyn, B. (2025, January 7). Meta says it will end fact-checking as Silicon Valley prepares for Trump. *NPR*. Retrieved from <https://www.npr.org/2025/01/07/nx-s1-5251151/meta-fact-checking-mark-zuckerberg-trump>
- Kao, J., & Bengani, P. (2023, December 20). How verified accounts on X thrive while spreading misinformation about the Israel–Hamas conflict. ProPublica. HYPERLINK "<https://www.propublica.org/article/x-verified-accounts-misinformation-israel-hamas-conflict>"<https://www.propublica.org/article/x-verified-accounts-misinformation-israel-hamas-conflict>
- Katz, E. (2025, January 27). Ask the expert: What Meta's new fact-checking policies mean for misinformation and hate speech. *Michigan State University*. Retrieved from <https://msutoday.msu.edu/news/2025/ask-the-expert-what-meta-new-fact-checking-policies-mean-for-misinformation-and-hate-speech/>
- Klepper, D. (2022, November 3). Misinformation and the midterm elections: What to expect. AP News. Retrieved from HYPERLINK "<https://apnews.com/article/2022-midterm-elections-misinformation-219762637bac49bf7ec723546b46fb3>"<https://apnews.com/article/2022-midterm-elections-misinformation-219762637bac49bf7ec723546b46fb3>
- Legum, J. (2020, February 13). The facts about Facebook's fact-checking program. *Popular 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popular.info/p/the-facts-about-facebooks-fact-checking>
- Meta. (2020a, August 13). 한국에서 제3자 팩트체크(Third-party Fact-checking) 프로그램 출범. *Meta Newsroom*. Retrieved from <https://about.fb.com/ko/news/2020/08/%ED%95%9C%EA%B5%AD%EC%97%90%EC%84%9C-%EC%A0%9C3%EC%9E%90-%ED%8C%A9%ED%8A%B8%EC%B2%B4%ED%82%B9third-party-fact-checking-%ED%94%84%EB%A1%9C%EA%B7%B8%EB%9E%A8-%EC%B6%9C%EB%B2%94/>
- Meta. (2020b, October 7). AFP가 한국 제3자 팩트체크(Third-party Fact-checking)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Meta Newsroom*. Retrieved from <https://about.fb.com/ko/news/2020/10/afp%EA%B0%80-%ED%95%9C%EA%B5%AD-%EC%A0%9C3%EC%9E%90-%ED%8C%A9%ED%8A%B8%EC%B2%B4%ED%82%B9third-party-fact-checking-%ED%94%84%EB%A1%9C%EA%B7%B8%EB%9E%A8%EC%97%90-%EC%B0%B8%EC%97%AC%ED%95%A9%EB%8B%B8/>
- Meta Business Help Center. (n.d.). About fact-checking on Facebook, Instagram and Threads. *Meta*. Retrieved from <https://www.facebook.com/business/help/2593586717571940>
- Meta Journalism Project. (2020, march 23). Partnering with Third-Party Fact-Checkers. *Meta*. Retrieved from <https://www.facebook.com/journalismproject/programs/third-party-fact-checking/selecting-partners>
- Miller, A. M. (2025, January 7). Conservatives rejoice over 'jaw-dropping' Meta censorship announcement: 'Huge win for free speech'. *Fox News*. Retrieved from <https://www.foxnews.com/politics/conservatives-rejoice-over-jaw-dropping-meta-censorship-announcement-huge-win-for-free-speech?msockid=23eb4a994751629c13695e1546eb6309>
- Mündges, S., & Park, K. (2024). But did they really? Platforms' compliance with the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in review. *Internet Policy Review*, 13(3), <https://doi.org/10.14763/2024.3.1786>
- PolitiFact. (2021, June 2). Social media posts repeat false information about wearing masks after COVID-19 vaccination. Retrieved from <https://www.politifact.com/factchecks/2021/jun/02/facebook-posts/social-media-posts-repeat-false-information-about/>
- Poynter Institute. (n.d.).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 *Poynter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s://www.poynter.org/ifcn/>
- Qiu, L. (2021, January 5). Fact-checking falsehoods on mail-in voting.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article/fact-checking-mail-in-voting.html>

- Reinero, D. A., Harris, E. A., Rathje, S., Duke, A., & Van Bavel, J. J. (2023, May 11). *Partisans are more likely to entrench their beliefs in misinformation when political outgroup members correct claims*. <https://doi.org/10.31234/osf.io/z4df3>
- Reuters. (n.d.). About: Reuters fact check, *Reuters*.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fact-check/about/>
- Roeder, A. (2025, January 10). *Meta's fact-checking changes raise concerns about spread of science misinformation*. Harvard T.H. Chan School of Public Health, <https://hsph.harvard.edu/news/metaspfact-checking-changes-raise-concerns-about-spread-of-science-misinformation/>
- Rutenberg, J., & Conger, K. (2024, January 25). Elon Musk is spreading election misinformation, but X's fact checkers are long gon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4/01/25/us/politics/elon-musk-election-misinformation-x-twitter.html>
- Sherman, A. (2020, November 1). Trump's cascade of falsehoods about voting by mail, *PolitiFact*. Retrieved from <https://www.politifact.com/article/2020/nov/01/trumps-cascade-falsehoods-about-voting-mail/>
- U.S.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2018). Russian active measures campaigns and interference in the 2016 U.S. election. Retrieved from <https://www.intelligence.senate.gov/publications/report-select-committee-intelligence-united-states-senate-russian-active-measures>
- Walker, M., & Gottfried, J. (2019, June 27). Republicans far more likely than Democrats to say fact-checkers tend to favor one side, *Pew Research Center*. Retrieved from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19/06/27/republicans-far-more-likely-than-democrats-to-say-fact-checkers-tend-to-favor-one-side/>
- X. (2022). Helpful Birdwatch notes now visible to everyone on Twitter US. X. Retrieved from https://blog.x.com/en_us/topics/product/2022/helpful-birdwatch-notes-now-visible-everyone-twitter-us

02

플랫폼 팩트체크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I. 팩트체크의 개념과 중요성

미국 언론에서 100여 년에 걸쳐 정립된 <저널리즘 기본 원칙>을 저술한 코바치와 로젠스탈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은 '진실'이다(Kovach&Rosentiel, 2003).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의 핵심은 사실 검증이다. 사실을 검증해 보도하는 일은 기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치인이나 유튜버의 말을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언론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새로운 뉴스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팩트체크는 말 그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1920~30년대 미국 뉴스잡지 업계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정은령, 2022). 초기 팩트체크는 기자들의 원고를 한 단어씩 검토하며 정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단순한 받아쓰기가 아니라 발언 내용 자체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현대적 팩트체크는 20세기 초 미국 언론계에서 확립된 객관주의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정은령, 2023). 객관주의 보도는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기자들이 정치적 논쟁을 공정하게 재현하고 논평 없이 뉴스만 전달해야 한다는 규범을 따른다. 반면,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장의 정확성을 직접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단순히 발언을 올바르게 인용했는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즉, 현대적 팩트체크는 독립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발언의 진위를 판별하고, 그 결과를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평가적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공적 담론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허위정보(이 글에서는 허위조작정보+오정보를 허위정보라 표기함) 확산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언론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된 것은 소위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정보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거짓 정보를 의미한다(Bittman, 1985). 그냥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오정보)와는 다르게, 허위조작정보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오정보와는 차이가 있다. 오정보는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의미한다(Fetzer, 2004). 오정보도 사람들을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 더 빠르고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주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허위조작정보가 늘어나고 있어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체커들의 현황은 녹록지가 않다. 미국에 본부를 둔 비영리 언론 교육 기관인 포인터 연구소(The Poynter Institute for Media Studies)는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이후 IFCN으로 표기)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 팩트체킹 단체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FCN의 보고서(2023)에 따르면, 137개 팩트체커 조직(69개국)이 참여한 설문에서 팩트체커들은 자금 조달과 지속 가능성을 주요 도전과제로 꼽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최초 팩트체크 플랫폼인 SNU팩트체크센터가 네이버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출범 7년 만인 지난해 8월 무기한 활동 중단에 들어갔다. SNU팩트체크센터는 30여개 언론사들과 협업한 비영리 팩트체크 플랫폼으로 언론의 팩트체크 보도를 비교할 수 있고 근거자료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요구 기준을 마련해 한국의 팩트체크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하는 데 기여해왔다(박재령, 2024, 8, 19).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지금,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제도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II. 디지털 환경에서 팩트체크의 도전과 과제

1. 에코챔버 및 확증편향

에코챔버(Echo Chamber)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며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환경을 의미한다(Sunstein, 2001). 이러한 환경에서는 반대의견이 차단되거나 무시되어, 특정 신념이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이는 인간의 인지적 편향 중 하나로, 객관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특정 신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Nickerson, 1998). 에코챔버와 확증편향은 상호 작용하며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기존 관심사와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하여 에코챔버를 형성하고, 이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면서 확증편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정보 환경에서는 객관적 사실보다 특정한 관점을 강화하는 정보가 더욱 확산되기 쉬우며,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팩트체크의 효과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 결과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져 팩트체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새론 사건을 통해 에코챔버와 확증편향이 대중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이후, 비난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이 강화되었고, 생활고 주장과 카페 아르바이트 논란, 홀덤펍 방문 등이 잇따라 보도되며 '생활고를 가장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이 필터링 없이 반복적으로 소비되면서 대중은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확증편향을 보였다. 2025년 그가 사망한 이후에야 과거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뒤늦게 알려진 피해 보상과 사과 행보로 인해 일부 동정 여론이 형성되었다(박서연·금준경, 2025, 2, 18). 김새론 사건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확증편향과 에코챔버 효과가 어떻게 특정한 서사를 강화하고, 팩트체킹을 무력화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카페 아르바이트 사진이 조작이라는 주장은 검증 없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반박 증거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정적 서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렀다. 이는 팩트체킹이 단순히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념과 감정이 결합된 정보 환경에서 진실을 전달하는 어려운 과정임을 시사한다. 팩트체킹이 허위정보가 자리 잡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건강한 정보 순환 구조를 만드는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AI 기반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2023년 오픈AI의 DALL-E 3와 메타의 이미지 생성 모델 출시 이후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아우르는 복합적 허위정보 생성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구글과 듀크대 연구팀이 팩트체크 사이트 및 미디어 단체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가 2023년 초 이후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김태중, 2024, 5, 31). 일례로 미국 대선 기간, 한 팟캐스트 진행자가 GPT-3를 활용해 조 바이든 후보의 인지 능력을 폄훼하는 가



짜뉴스를 대량 생산했다(김헌재, 2024). ‘바이든, 치매 의심 증후 보여’ 등의 제목과 함께 AI가 생성한 어설픈 연설 장면 이미지도 첨부해 웹사이트에 게시했고, 이 가짜뉴스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수만 회 공유되며 확산됐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팩트체크 뉴스보다 더 많이 공유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내고 있어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버즈피드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했던 가짜뉴스 50건 중 23건이 미국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 가짜뉴스들은 총 110만 건의 페이스북 참여(공유, 좋아요, 댓글 등)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됐다(Silverman, 2016, 12, 30). 또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일부 가짜뉴스는 주요 기성 언론사의 뉴스보다 더 많이 공유되기도 했다(Silverman, 2016, 11, 17).

딥페이크(Deepfake)도 허위정보를 생산하는 데 악용되고 있어 팩트체커들에게는 도전적 과제이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람의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하거나 변형함으로써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Kietzmann, 2020)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허위정보 확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지원 건수가

2018년 177건에서 2019년 417건, 2020년 상반기 22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원, 2023).

딥페이크 기술은 정치적 선전 도구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국 디지털 신원 확인 보안 업체에 따르면 2024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 2024). 인도(280%), 미국(303%), 남아프리카공화국(500%), 멕시코(500%), 몰도바(900%), 인도네시아(1550%), 한국(1625%)이 크게 증가했고, 불가리아(3000%), 포르투갈(1700%), 벨기에(800%), 스페인(191%), 독일(142%), 프랑스(97%) 등 많은 국가에서 딥페이크 사건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은 육안이나 단순한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팩트체크 방식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팩트체커들은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 도입, 출처 검증을 위한 메타데이터 분석,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한 크로스체크 등 새로운 방식의 검증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팩트체커들은 계속해서 진화하는 조작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결국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시대의 팩트체크는 단순한 정보 검증을 넘어, 첨단 기술과 협력하여 진실과 허구를 가려내는 지속적인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팩트체크의 시간적 지체 문제

소셜 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의 확산 속도는 매우 빠른 반면, 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 연구(Vosoughi et al., 2018; Wu et al., 2019)에 따르면, 하나의 주장에 대한 검증에는 평균적으로 24~72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허위정보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팩트체크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간 팩트체커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출처를 교차 검증해야 하기 때

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된 팩트체크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여전히 중요한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기 전 허위정보가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팩트체크의 교정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Lee, Xiong, Seo, & Lee, 2023).

포터와 우드(Porter & Wood, 2021)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팩트체크는 허위정보에 대한 신념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팩트체크가 지연될 경우 특히 허위정보에 노출된 후 2주 이상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팩트체크는 허위정보 교정 효과가 6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허위정보가 일단 사람들에게 내면화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형지 등(2020)은 연구를 통해 가짜뉴스는 소셜 미디어, 포털,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반면, 팩트체크 뉴스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뉴스 포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뒤늦게 전달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허위정보가 사람들의 인식에 먼저 각인된 후 교정되는 시간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연구자들은 지적한다. 팩트체크 뉴스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빠른 대응과 높은 가시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플랫폼 차원의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하며, 팩트체크 정보가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즉, 알고리즘을 통해 검증된 정보를 보다 가시적으로 제공하고, 허위정보보다 먼저 노출될 수 있도록 팩트체크 기사의 노출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팩트체크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 기반의 자동 검증 기술을 활용하고, 팩트체크 결과가 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허위정보가 포함된 콘텐츠에 팩트체크된 정보를 자동 연결해 이용자가 진실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허위정보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팩트체크를 넘어, 플랫폼과 이용자가 협력하는 정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허위정보 확산 속도를 줄이고 팩트체크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단순히 정보 전달자가 아닌 책임 있는 정보 필터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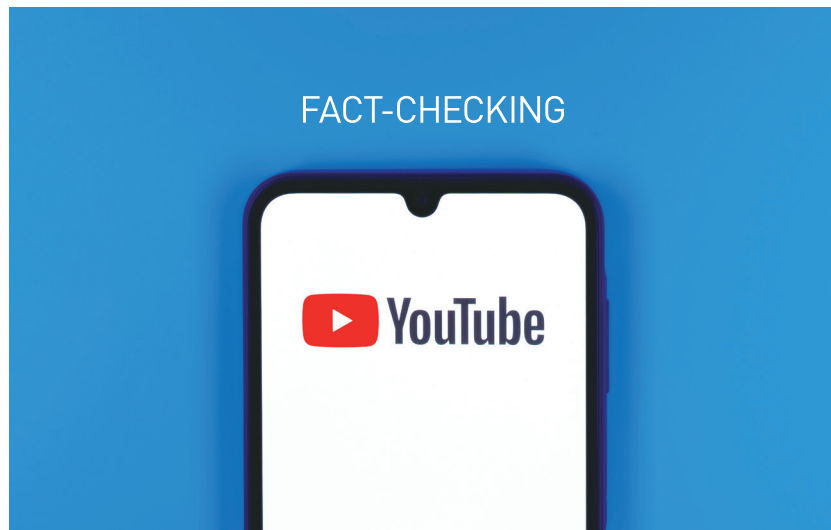
III. 주요 플랫폼의 팩트체크 정책 과 운영 현황

1.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팩트체크 정책과 운영 현황

메타는 2016년부터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Meta, 2018, 6, 14). 이 프로그램은 IFCN의 인증을 받은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하여 메타 플랫폼 내 콘텐츠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세계 60여 개 언어로 콘텐츠를 검토하는 80여 개의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하여, 허위로 판명된 콘텐츠의 노출을 줄이고 경고 라벨을 보여주었다. 팩트체크 파트너가 허위로 판정한 콘텐츠는 뉴스피드 하단으로 이동시켜 노출을 억제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페이지나 도메인에 대해서는 수익화 및 광고 권한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2025년 1월 메타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콘텐츠 관리 오류 감소를 이유로 미국에서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Meta, 2025, 2, 20). 이에 따라 2025년 2월 20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에서 커뮤니티 노트 기능이 도입되어 승인된 기여자들이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발견하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노트를 첨부할 수 있게 됐다. 메타는 이 기능을 통해 플랫폼이 직접 콘텐츠를 검열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커뮤니티 노트는 이용자 참여 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특정 게시물에 노트를 작성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해당 노트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용자들로부터 유용하다고 평가된 노트만 게시물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허위정보에 대한 보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노트 모델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최소 6개월 이상 활동한 사용자, 활성화된 전화번호를 등록한 사용자, 플랫폼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사용자면 승인된 기여자가 될 수 있어 누구나 커뮤니티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가 작성하는 노트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유효한 팩트체크도 특정 그룹이 다수 의견을 형성하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어떤 노트가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도, 투표한 기여자들의 성향이 다양하지 않다면 '유용한 정보'로 평가되지 않아 일반 사용자들이 볼 수 없다. 2023년 10월,



비영리단체 ‘디지털증오대응센터(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선거와 관련된 허위정보 게시물 283건 중 74%에 해당하는 209건의 게시물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노트가 표시되지 않았다(CBS News, 2025, 1, 10). 이는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이 허위정보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 팩트체커의 부재로 인해 복잡한 이슈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허위정보가 정당성을 얻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커뮤니티 노트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노트 작성자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강화된 검증 시스템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유튜브의 팩트체크 정책과 운영 현황

유튜브는 플랫폼 내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Ma & Feldman, 2022, 11, 29). 이는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Google News Initiative)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하여 콘텐츠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있다.

또 유튜브는 2023년 8월 의료 오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정책

을 발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2023, 8, 15). 유튜브는 미국 의학한림원(NAM), 세계보건기구(WHO), 의학전문학회협의회(CMSS)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출처를 선정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의료 오정보를 식별하고 있다(Graham, 2024, 1, 30). 유튜브 헬스 기능이 적용되면 ‘대한민국의 면허를 소지한 의사’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동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보건 정보 출처에 대한 정보 패널)이 표시되고 건강 관련 주제를 검색했을 때 먼저 추천되는 ‘보건 콘텐츠 섹션’에 포함된다(최현석, 2024, 2, 1).

이와 함께 유튜브는 X(옛 트위터)와 유사한 형태로 커뮤니티 노트 기능을 도입했다(Salinas, 2024, 6, 19). 커뮤니티 노트는 선별된 일부 기여자들이 동영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다른 성향의 사용자들이 동일하게 ‘유용하다’고 평가한 경우, 해당 노트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콘텐츠에서 팩트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유튜브가 허위정보를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팩트체크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또 팩트체크 시스템과 커뮤니티 노트 기능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네이버와 카카오 팩트체크 정책과 운영 현황

네이버에서는 2017년부터 SNU팩트체크센터가 여러 언론사들과 협력하여 팩트체크 기사 비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해왔다. 그러나 2023년 8월 네이버는 SNU팩트체크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고 네이버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도 개편했다. 2018년부터 뉴스 홈에 ‘팩트체크’ 메뉴를 운영해왔는데, 2023년 9월 26일부터 뉴스 서비스 개편을 단행하며, 기존 SNU팩트체크센터의 기사 제공 방식을 폐지하고 개별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김소현, 2023, 9, 26). 팩트체크 페이지에는 언론사에서 공적 관

심사를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가 최신순으로 배열된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각 언론사에서 생성한 팩트체크 기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밝혔지만, 기존 SNU팩트체크센터가 유지했던 엄격한 검증 절차와 표준이 사라지면서 팩트체크 기사의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네이버는 정정보도 모음 페이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살 관련 기사 댓글을 자동으로 가려주는 기능을 추가했다. 고침기사,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반론·추후보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선거보도로 경고·주의를 받은 기사를 모아서 제공해 이용자들이 더 쉽게 정정보도 기사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김소현, 2023, 9, 26). 특히 모바일 메인 MY뉴스판, 언론사 편집판 등에서도 정정보도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를 제공하고, 뉴스 서비스 상단 메뉴를 통해 관련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네이버의 팩트체크 개편은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독립적인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폐지함으로써 허위정보 방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카카오는 허위정보 및 딥페이크 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해 기술적 조치, AI 기반 기사 표기, 캠페인 진행, 신고 시스템 운영 및 정부 기관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Kakao, 2024, 3, 13). 먼저 기술적 조치로,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비가시성 워터마크를 도입하여 딥페이크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워터마크를 통해 이미지의 가시적 훼손 없이 AI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언론사가 AI를 활용해 작성한 기사에는 '자동 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기사'라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AI 생성 콘텐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는 다음 카페, 티스토리, 카카오톡스토리, 브런치스토리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건전한 선거 문화 정착 및 딥페이크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허위정보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악의적인 딥페이크와 선거 관련 허위 콘텐츠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가 이러한 콘텐츠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위정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허위정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플랫폼 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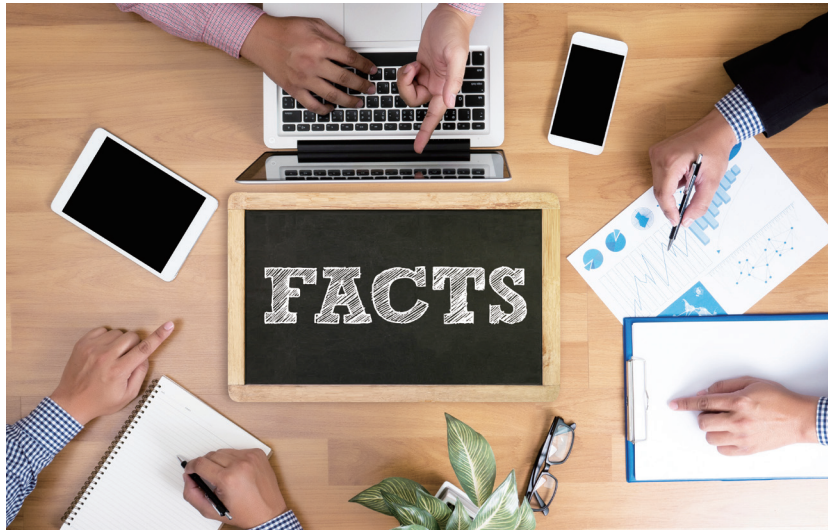
한편, 2017년 대선 정국에서는 대선 특집 페이지(Kakao, 2017, 4, 21)에 ‘가짜 뉴스 바로 알기’ 코너를 마련해 가짜 뉴스 관련 기사, 사례, 판별법,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고, ‘언론사별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언론사가 대선 관련 주요 이슈, 주장, 공약 등에 대해 사실 관계를 분석한 기사를 모아서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팩트체크 현황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독립적인 검증 체계의 약화와 팩트체크 신뢰성 저하라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네이버의 SNU팩트체크센터 지원 중단은 엄격한 검증 절차와 표준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고, 카카오의 허위정보 대응 시스템 또한 AI 기반 자동 탐지 기술과 팩트체커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 제공 방식의 변화가 아닌,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IV. 플랫폼 팩트체크 발전을 위한 제언

허위정보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들의 팩트체크 시스템은 더욱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내 플랫폼들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 팩트체크의 발전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독립 팩트체커(IFCN 소속 기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유튜브는 IFCN 인증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하여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허위정보를 판별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 특히 네이버는 SNU팩트체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던 팩트체크 시스템을 2023년 중단하며, 개별 언론사들의 자율 검증 체계로 전환했는데, 팩트체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독립적인 검증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FCN은 전 세계 팩트체커들이 지켜야 할 규범인 △비정파성과 공정성 △취재원 투명성 △재정과 조직의 투명성 △검증방법의 투명성 △공개적이고 정직한 수정 등의 5개의 준칙과 이 준칙의 세부사항을 준수하는 팩트



체크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정은령, 2023). 네이버와 카카오는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IFCN 소속 조직)과 협력하여 검증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AI와 인간 팩트체커의 병행 운영을 제안한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허위정보 탐지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AI만으로 팩트체크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페이스북은 SimSearchNet++를 이용해 이미지 기반 허위정보를 탐지하지만(IEEE Spectrum, 2021, 8, 5),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AI 기반 자동 탐지 시스템과 인간 팩트체커의 협업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AI가 허위정보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선별하고, 2차적으로 IFCN 소속 팩트체크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이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 신고 시스템의 개선 및 처리 속도 향상이 필요하다. 틱톡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집행보고서(TikTok, 2021)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81,518,334개의 동영상상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또는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삭제했으며, 이 중 93.0%는 게시된 지 24시간 이내에, 94.1%는 이용자 신고가 있기 전에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선거법 위반 댓글만 즉각 삭제하고, 기타 허위정보는 수동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방식이라 대응 속도가 느리다. 악의적 신고나 법적 문제, 검증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신고 후 검증까지의 프로세스를

‘AI+인간 팩트체커’ 협업을 통해 지금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글로벌 협력 확대 및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발적인 참여는 아니지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EU DSA(Digital Services Act) 정책에 따라 허위정보에 대한 실천 강령에 참여하고 있다(Korea-EU Research Centre, 2023, 1, 15). 허위정보 확산 문제는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국내 플랫폼들도 글로벌 팩트체킹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국제 표준에 맞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허위정보 확산은 플랫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특히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플랫폼들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팩트체크 기관을 보호해야 한다. 팩트체크 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부의 영향력을 받게 되면, 검증 자체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팩트체크 기관이 정부나 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플랫폼이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이 IFCN 인증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팩트체크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허브 구축을 지원하여, 플랫폼 간 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허위정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허위정보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교육과 성인 교육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허위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허위정보 대응은 팩트체커와 팩트체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플랫폼,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지속 가능한 팩트체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허위정보 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인 대응을 넘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정보 유통 구조의 개선 등 장기적인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김소현 (2023, 9, 26). 팩트체크 페이지 리뉴얼·이용자보호 강화...네이버, 26일 뉴스서비스 개편. <ITBizNews>. URL: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67>
- 김태종 (2024, 5, 31). "지난해 초 이후 Si가 만들어낸 이미지 이용한 가짜정보 급증".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4053001220>
- 김형지, 정은령, 김은미, 양소은, 이재우, 강민지 (2020).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뉴스 노출 집단의 미디어 이용과 뉴스 인식, 그리고 리터러시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01호, pp232-267.참조
- 김현재 (2024). 생성형 AI가 가짜뉴스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9(2), 제9권 제2호, pp420-429.참조
- 김희정 (2024).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법적책적 시사점: 외국의 법적책 대응을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 pp97-128.참조
- 박서연·금준경 (2025, 2, 18). 25세 김새론 배우의 죽음, 언론의 자성 그 이상이 필요하다. <미디어오늘>. URL: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411>
- 박재령 (2024, 8, 19). '정치권 외압' 시달리던 SNU팩트체크 결국 활동 무기한 중단. <미디어오늘>. URL: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301>
- 신성원 (2023).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4호, pp147-168.참조
- 정은령 (2022). 팩트체크란 무엇인가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팩트체크편>(김경희, 정은령, 김수진, 최재원, 송영훈).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은령 (2023). 팩트체크 글로벌 동향과 SNU팩트체크.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 아시아브리프>, 제3권 제44호, pp1-31.참조
- 최현석 (2024, 2, 1). 유튜브, 공신력 있는 의료정보 국내 유통 확대한다.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1155200017>
- Bill Kovach & Tom Rosenstiel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1st ed.). 이재경 (역) (2003).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Bittman, L. (1985). *The KGB and Soviet Disinformation: An Insider's View*, Virginia: Pergamon-Brassey's International Defense Publishers.
- CBS News (2025, 1, 10). What is Community Notes? Twitter/X, Facebook and Instagram's fact-checking tool explained. (CBS News). Retrieved from <https://www.cbsnews.com/news/what-is-community-notes-twitter-x-facebook-instagram>
- Graham, G. (2024, 1, 30). 의료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Youtube Official Blog> URL: https://blog.youtube/intl/ko-kr/news-and-events/2024_01_health-corpus-expansion-korea
- Fetzer, J. H. (2004). Information: Does it Have To Be True?. *Minds and Machines*, 14(2), 223-229.
- IEEE Spectrum (2021, 8, 5). How Facebook's AI tools tackle misinformation. <IEEE Spectrum>. Retrieved from <https://spectrum.ieee.org/how-facebooks-ai-tools-tackle-misinformation>
-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2023). State of fact-checkers 2023. Poynter.
- Kakao (2017, 4, 21). 카카오, 다음 대선 특집 페이지 2차 개편. URL: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8288>
- Kakao (2024, 3, 13). 딥페이크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노력. URL: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10943>
- Kietzmann, J., Lee, L., McCarthy, I., & Kietzmann, T. (2020). Deepfakes: Trick or treat?. *Business Horizons*, 63(2), 135-146.
- Korea-EU Research Centre (2023, 1, 15). EU-틱톡, 데이터 보안·허위 정보·EU 디지털 규제 논의 (1.10). Korea-EU Research Centre. URL: <https://k-erc.eu/2023/02/europe-trends/12868/>
- Lee, S., Xiong, A., Seo, H., & Lee, D. (2023). "Fact-checking" fact checkers: A data-driven approach. *Harvard Kennedy School Misinformation Review*, 4(5). <https://doi.org/10.37016/mr-2020-126>

- Ma, O. & Feldman, B. (2022, 11, 29). How Google and YouTube are investing in fact-checking. Google. Retrieved from <https://blog.google/outreach-initiatives/google-news-initiative/how-google-and-youtube-are-investing-in-fact-checking/>
- Meta (2018, 6, 14). Hard Questions: How Is Facebook's Fact-Checking Program Working?. Meta. Retrieved from <https://about.fb.com/news/2018/06/hard-questions-fact-checking/>
- Meta (2025, 2, 20). Community Notes: A New Way to Add Context to Posts. Meta. Retrieved from <https://transparency.meta.com/features/community-notes>
-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 Porter, E., & Wood, T. J. (2021). The global effectiveness of fact-checking: Evidence from simultaneous experiments in Argentina, Nigeria, South Africa, and the United Kingdom. *PNAS*, 118(37), e2104235118. <https://doi.org/10.1073/pnas.2104235118>
- Salinas G. (2024, 6, 19). YouTube adds Community Notes feature. 〈Creator Handbook〉. Retrieved from <https://www.creatorhandbook.net/youtube-adds-community-notes-feature/>
- Silverman, C. (2016, 11, 17). This Analysis Shows How Viral Fake Election News Stories Outperformed Real News On Facebook. 〈BuzzFeed News〉. Retrieved from 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viral-fake-election-news-outperformed-real-news-on-facebook?utm_term=.qdjwmRjr4#.qjBoL7mkK
- Silverman, C. (2016, 12, 30). Here are 50 of the biggest fake news hits on facebook from 2016. 〈BuzzFeed News〉. Retrieved from https://www.buzzfeed.com/craigsilverman/top-fake-news-of-2016?utm_term=.tcRMlxvQ#.gIMVQkmb0
- Sunstein, C. R. (2001). *Republic.c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ikTok (2021).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집행 보고서 2021년 2분기. URL: <https://www.tiktok.com/transparency/ko-kr/community-guidelines-enforcement-2021-2>
- 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 (2023, 8, 15). YouTube announces new policies to target medical mis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www.unmc.edu/healthsecurity/transmission/2023/08/15/youtube-announces-new-policies-to-target-medical-misinformation/>
- Vosoughi, S., Roy, D., & Aral, S. (2018). The spread of true and false news online. *Science*, 359(6380), 1146–1151.
- Wu, L., Morstatter, F., Carley, K. M., & Liu, H. (2019). Misinformation in social media. *ACM SIGKDD Explorations Newsletter*, 21(2), 80–90.

03

‘플랫폼 내 팩트체크’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한 헌법적 쟁점

– 미국의 표현의 자유 법리와 사례에 있어서

조영승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연구교수



I. 들어가며

리서치 기관인 스탯리스타(Statista)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가 중 42%만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전 세계 인구 중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20%에 불과하다.¹⁾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진실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허위정보로 인한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0년 대선 실패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기한 수십 건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은 기각(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그동안 트럼프와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정치 반대 세력에게 문제 삼았던 수많은 문제제기들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²⁾ 이와 같은 허위정보는 미국에서 사회적 반향을 가져왔고, 2024년 11월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에 메타(Meta)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겠다고면서 팩트체크(Fact-checking)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였다.³⁾ 이에 대해 메타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술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가짜뉴스(허위정보) 문제가 보다 정교해진 타겟팅과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력이 점점 가속화됨에 따라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팩트체크는 쉽지 않고 특히 팩트체크의 대상인 가짜뉴스의 본질과 정당성에 대한 많은 질문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즉 이러한 질문은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가짜뉴스와 허용될 수 없는 가짜뉴스는 무엇인가? 팩트체크자는 누가 담당하는가? 팩트체크자가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과연 팩트체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범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가치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나쁜 표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정작용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큰 사

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3143/degree-of-press-freedom-worldwide/>

2)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nspiracy_theories_promoted_by_Donald_Trump

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108/130815382/1>

회적 해악을 가진 표현들은 진리 발견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규범 또한 성립한다. 생각건대 이러한 점에서 그 핵심은 팩트체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 및 그 양면성이 서로 연계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플랫폼 내 팩트체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상당히 다양한 양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글은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유형은 “공동규제 또는 규제된 자율규제”로서, 정부가 팩트체크를 유도하거나 이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고 플랫폼사업자는 이에 따라 팩트체크를 진행한 경우(이하 “정부의 개입에 따른 플랫폼 내 팩트체크”라 한다)이다. 이처럼 정부의 개입에 따른 플랫폼 내 팩트체크의 경우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소비자 양자 모두가 정부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자발적 자율규제”로서, 플랫폼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하는 경우(이하 “자발적인 플랫폼 내 팩트체크”라 한다)이다. 자발적인 플랫폼 내 팩트체크의 경우에 플랫폼사업자는 국가(정부)가 아닌 개인에 불과하므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미국의 state action 이론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제공된 플랫폼이 공적광장에 해당한다면 공적광장 이론(public forum theory)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II. 정부의 개입에 따른 플랫폼 내 팩트체크

여기에서 최근 미국에서 정부의 팩트체크 유도, 강제 또는 금지규정을 둔 주(州)법이 연방헌법에 위반되는지와 관련된 미연방대법원의 2가지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판결은 정부가 팩트체크를 유도 내지 강제한 것과 관련된 2024. 6. 26. 선고된 머시 사건(Murthy v. Missouri, 603 U.S. 43)이고 두 번째 판결은 정부가 팩트체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2024. 7. 1. 선고된 넷초이스 사건(Moody v. NetChoice, LLC, 603 U.S. 707)이다.

1. 머시 사건

이 사건은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 및 소셜 미디어 사용자 5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당시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되었으며 당시 연방정



부가 메타,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사와 연계하여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사건에서는 COVID-19 허위정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주와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연방의 기관과 공무원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압력을 가해 특정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했으며 따라서 연방정부가 주와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고, 연방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보호되는 표현에 대하여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고무 혹은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및 명령을 발부하였다.⁴⁾ 연방정부와 공무원들은 항소하였고, 이를 담당한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의 강요 아래 플랫폼사업자의 검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축 효과로 발생하는) 플랫폼소비자의 자체검열(self-censorship)은 그가 “이 전에 소셜 미디어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관여로 연계된 플랫폼 사업자의 검열로 인해) 입었던 매우 현실적인 검열 피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래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증거이며, … (가상의 미래 피해에 대한

4) Missouri v. Biden, 680 F. Supp. 3d 630 (W.D. La.)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를 구성”하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⁵⁾ 다만, 가처분 명령은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광범위하게, 즉 연방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유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고 필요한 정도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콘텐츠 검열을 “촉구, 격려, 압력 또는 유도”하는 정부 행위 유형은 이것이 “강압 혹은 결정적인 고무(significant encouragement)”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험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⁶⁾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실제적인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임을 제시”하여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주장할 만큼 (법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청구인적격을 부정하였다. 특히 법정의견을 집필한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은 청구인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연설자의 콘텐츠를 읽고 참여하기 위한 이익”을 주장함에 대하여 이것은 표현의 수령자가 연설자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결이 있는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정보수령권’(right to receive information and ideas)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가처분 명령과 같은 장래 지향적인 청구가 임박하지 않은 가상의 미래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하여 단순히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하고,⁷⁾ 가처분 또한 역시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Reversed and remanded)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일부 혹은 대체로 청구인의 주장을 지지하여 팩트체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연방대법원은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송하는 것으로 판단해, 팩트체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평가된다.⁸⁾

5) *Missouri v. Biden*, 83 F.4th 350, 368~369 (5th Cir.) (팔호 안의 내용은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글쓴이의 보충설명임).

6) *Missouri v. Biden*, 83 F.4th 350, 395 (5th Cir.). 나아가 어떻게 위험에 이르지 않는 유형의 정부행위는 정부언론 이론이 적용되는 영역임을 인용하고 있다. *Ibid.*

7) *Murthy v. Missouri*, 603 U.S. 43, 73 (2024).

8) 이후에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 제기되는 경우에도 청구인 적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머시 사건에서 청구인 적격이 부정된 것을 입증의 부족 문제로 본다면, 이후 사건에서 청구인 혹은 추가 구체적이고 강력한 입증을 한다면 불안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다룰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제1 연방항소법원 판결로는 *New Jersey v. Trump*, No. 25-1170, 2025 WL 759612, at *7 (1st Cir. Mar. 11, 2025) 참조.

그러나 3인의 반대의견을 작성한 알리토(Samuel Anthony Alito) 대법관은 이 사건이 수년간 이 법원에 도달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 사건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적어도 청구인 중 1인의 소송당사자 지위를 긍정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팩트체크에 대한 정부 개입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다.⁹⁾

첫째, 소셜 미디어는 많은 미국인에게 주요 뉴스 소스가 되었고, 다른 미디어의 쇠퇴와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인터넷 플랫폼은 부유하고 강력하지만 동시에 다른 뉴스에서보다 정부의 압력에 훨씬 취약하다. 대통령이 특정 신문을 싫어하더라도 신문사 영업을 중단시킬 수 없으나, 페이스북과 다른 많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들 플랫폼은 1996년 통신품위법¹⁰⁾ 제230조의 보호에 크게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부의 반독점 조치에 취약하고¹¹⁾, 나아가 이들의 상당한 해외 사업이 유럽연합 및 기타 외국 관할권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의존한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터넷 플랫폼은 영향력 있는 연방 공무원을 만족시키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기록이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2. 넷초이스 사건¹²⁾

이 사건은 넷초이스사(NetChoice LLC)가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 등 인터넷 플랫폼의 관리 및 검열과 같은 콘텐츠 모더레이션(content moderation)을 금지하도록 하는 플로리다주법(Senate Bill 7072)과 텍사스주법(House

9) Murthy., 603 U.S. 43, 76~109.

10)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으며, 현재 1996년 통신품위법의 적용을 받는다.

11) 예를 들어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잠재적인 반독점 소송이 페이스북의 “실존하는”(existential) 위협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https://www.theverge.com/2019/10/1/20892354/mark-zuckerberg-full-transcript-leaked-facebook-meetings>

12) 이 사례는 정부가 플랫폼 내 팩트체크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플랫폼 내 팩트체크의 분류에서 자율규제 형식의 팩트체크가 아니다.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한 공동규제의 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편의상 이 항목에서 기술되고 있음을 밝힌다.



Bill 20)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병합사건이다. 플로리다 및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넷초이스사의 가처분 신청을 허가하였고, 제11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체로 지지한 반면,¹³⁾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환송하였다.^{14) 15)}

많은 사람들이 이 2개의 주법이 위헌일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정부의 규제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하는 중에¹⁶⁾ 법정의견을 작성한 카간(Elena Kagan) 대법관은 2개의 항소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환송하였다.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넷초이스사가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면

¹³⁾ NetChoice, LLC v. Att'y Gen., Fla., 34 F.4th 1196 (11th Cir. 2022).

¹⁴⁾ NetChoice, L.L.C. v. Paxton, 49 F.4th 439 (5th Cir. 2022).

¹⁵⁾ 제5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플랫폼 팩트체크를 금지하는 정부 규제를 지지하게 된 것인데, 이와 같은 정부 규제는 빅테크 사업자의 자유주의적 편향성에 대한 보복형식으로 공화당이 통과시킨 것이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https://slate.com/technology/2022/05/texas-internet-censorship-social-media-first-amendment-fifth-circuit.html>

¹⁶⁾ 뉴욕타임즈, AP 뉴스의 보도를 참조.

<https://www.nytimes.com/2024/02/26/us/politics/supreme-court-social-media-texas-florida.html>

<https://apnews.com/article/supreme-court-social-media-florida-texas-19180ad0a9bdf48ddb77f14a5e335545>

서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플랫폼의 편집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법률이 전면적으로 위헌(문면상 위헌 facial challenge)임을 주장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¹⁷⁾ 법률의 전면적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은 적용상 위헌 판단의 경우보다 광범위한 사례에서 위헌적 적용을 주장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정의견은 “하급법원에서 플로리다와 텍사스 법이 적용되는 행위의 모든 범주를 다루고 있지 못하며 (Facebook의 피드와 같이 한정된 사례에서 위헌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 이 사건에서 제기된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가 ‘문면상 위헌’인지 여부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적 적용이 합헌적 적용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것인가를 법률의 모든 적용을 결정하여 비교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⁸⁾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법률이 위헌으로 적용되는 상당한 케이스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하급심으로 미룬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표현 행위와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경우라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태도를 확인하고 있다.¹⁹⁾

III. 자발적인 플랫폼 내 팩트체크

연방대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플랫폼사업자 또한 표현의 자유의 주체로 상정하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가 마치 언론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팩트체크로 콘텐츠를 조정하게 된다면, 플랫폼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만약 플랫폼이 현대판 공론장이라고 한다면, 온라인플랫폼이 헌법상의 공적광장 이론(public forum doctrine)이 적용되는 영역인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플랫폼사업자의 팩트체크로 플랫폼소비자의 표현을 침해하는 경우 책임소재 등에 관련한 일련의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¹⁷⁾ 넷초이스(NetChoice LLC)는 구글, 아마존, 메타, 틱톡 등의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무역협회로, 자유 기업 체제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인터넷 안전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https://netchoice.org/about/#association-members>

¹⁸⁾ Moody v. NetChoice, LLC, 603 U.S. 707, 707 (2024).

¹⁹⁾ Ibid., 716, 717. 당해 사건에서 제5순회 항소법원은 플랫폼의 편집권 및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1. 공적광장 이론

미국의 공적광장 이론은 1939년 정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미국 표현의 자유 제한 법리로 정립되어 온 이론이다. 이는 ‘공적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이론으로,²⁰⁾ 공적광장에서 행해지는 표현에 대하여 ‘정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공적광장 이론’은 거리, 보도, 공원 등 역사적으로 표현행위와 관련되었던 장소나 그밖에 의사소통의 핵심적 역할로 기능하는 장소에서 개인의 표현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는 이론이다.²¹⁾ 초기에 공적광장은 거리, 보도, 공원 등과 같은 곳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지역은 비용이 많이 들고 더 효과적인 다른 표현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²²⁾ 현재 이와 같은 공적광장은 초기와 같은 ‘장소적’ 개념을 벗어나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metaphysical) 장소에서도 적용되고 있다.²³⁾ 요컨대, ‘공적광장’은 전통적으로 공개토론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어 왔거나 그밖에 의사소통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국민에 개방한 ‘정부재산’(public property)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2. 그렇다면 플랫폼은 공적광장인가?

연방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어떤 ‘재산’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재산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 왔고, 사적 재산에서의 표현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산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가 없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²⁵⁾ 플랫폼은 사적 재산임이 분명하고 연방대법원은 이 원칙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해오고

²⁰⁾ Hague v. C.I.O., 307 U.S. 496, 496 (1939).

²¹⁾ LAURENCE H. TRIB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987 (1988).

²²⁾ Martin v. City of Struthers, Ohio, 319 U.S. 141, 145-46 (1943).

²³⁾ Rosenberger v. Rector & Visitors of Univ. of Virginia, 515 U.S. 819, 830 (1995).

²⁴⁾ 조영승, 미국헌법상 정부언론 이론에 관한 고찰 : 미연방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2.

²⁵⁾ Lloyd Corp. v. Tanner, 407 U.S. 551, 551 (1972); Hudgens v.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424 U.S. 507, 507 (1976); Ralphs Grocery Co. v. United Food & Commercial Workers Union Local 8, 55 Cal. 4th 1083, 1098 (2012).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공적광장인지 여부에서 출발하기로 한다. 플랫폼이 공적광장인지에 관한 문제는 플랫폼사업자 스스로의 팩트체크가 (플랫폼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제에서 공적광장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을 타진하는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 의미로 공적광장(public square)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²⁶⁾ 한편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유튜브가 헌법적 제한을 받는 공적광장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반해,²⁷⁾ 연방대법원은 소셜 미디어에 법적·규범적 의미에서 ‘공적광장(public forum)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플랫폼에 공적광장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플랫폼사업자의 팩트체크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와 연계될 수 있다. 이를 반대하는 견해는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사업자와 같은 개인(사인)에 의한 (플랫폼소비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들은 정부에 의한 제한에서의 그것보다 민주적 속의에 동등하거나 더 해롭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⁸⁾ 반면 플랫폼이 공적광장이라면 정부가 내용중립성, 나아가 관점중립성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고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이지만, 일단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입 통로를 열어둔 것이라는 관점에서도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론은 플랫폼사업자의 반대를 동반할 수 있고 특히 소셜 미디어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 및 위축효과를 감안한다면, 플랫폼에 규범적 의미의 공적광장 이론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소셜 미디어와 전통적인 공적광장이 점유하는 차이점을 외면하고 유사점만을 가지고 공적광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이러한 견해 중 하나는 특히 미국에서 공적 광장은 폭력적인 백인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며 인종·성별·능력에 따른 법적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⁹⁾ 다른 한편, 플랫폼을 공적광장으로 보게 된다면 정부가 아니라 플랫폼사업체에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

26) *Packingham v. North Carolina*, 582 U.S. 98, 107 (2017).

27) *Prager Univ. v. Google LLC*, 951 F.3d 991 (9th Cir. 2020).

28) <https://lpeproject.org/blog/after-the-great-deplatforming-reconsidering-the-shape-of-the-first-amendment/>

29) Mary Anne Franks, *Beyond the Public Square: Imagining Digital Democracy*, 131 Yale L.J. Forum 427, 428 (2021).

IV. 쟁점 정리 및 남은 과제

올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³⁰⁾

1)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언론의 자유가 실행될 경우 심각한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위협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을 오랜 법칙으로 확인해 오고 있다. 즉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경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본 정부의 개입에 따른 플랫폼 내 팩트체크에 관한 2가지 상반된 유형의 사건에서, 팩트체크가 플랫폼사업자 혹은 플랫폼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개입 상황에 대한 헌법적 평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 규제(팩트체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부규제의 위험성을 쉽게 비교형량하기 힘들다는 관점에서 보다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당장 미치는 실질적인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³¹⁾ 팩트체크를 지지하거나 혹은 부정하는 양자 모두에게 연방대법원의 결론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법적 시사점과 과제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2) 자율적인 플랫폼 내 팩트체크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고,³²⁾³³⁾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 진실한 정보 전

30) NetChoice, L.L.C. v. Paxton, 49 F.4th 439, 454–55 (5th Cir. 2022);

https://www.wakeforestlawreview.com/2024/01/a-private-public-forum-the-oxymoron-of-free-speech-on-social-media/#_ftn54

31) Bridges v. State of Cal., 314 U.S. 252, 261 (1941).

32) 심지어 가짜뉴스가 가지는 해악성을 고려하여 이를 표현의 자유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Wes Henricksen, Disinformation and the First Amendment: Fraud on the Public, 96 St. John's L. Rev. 543, 552~554 (2022) / 한편 모든 가짜뉴스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토론과 대화를 거쳐 진리발견에 이르게 하는 가치와 무관하게 시간을 지나서도 해소될 수 없는 심각한 해악성을 가진 표현을 보호되지 않는 표현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저자의 글은 다음을 참조, 조영승, 가짜뉴스의 개념과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102쪽.

33) 한편 가짜뉴스의 해악성은 미디어 리터러시나 및 지역미디어의 활성화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은 거의 모든 주장에서 나타난다. 그 밖에 연방선거에 있어서 딥페이크 등 기반적인 AI로부터의 선거보호법(Protect Elections from Deceptive AI Act)에 관한 합헌성 검토에 관한 논문에서는 결과적으로 당해 법을 합헌으로 보면서도 법안의 적용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가짜뉴스의 해악을 제거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다음을 참조, Sophie Loewenstein, Make America Fake Again?: Banning Deepfakes of Federal Candidates in Political Advertisements Under the First Amendment, 93 Fordham L. Rev. 273, 283 (2024).



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리에 대응하여 생각해 볼 때 반대론의 주요 논증은 자율적인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국가의 개입에 비견될 만큼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고(넷초이스 사건에서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의 입장) 이러한 팩트체크로 인하여 다시 사상의 자유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플랫폼사업자 또한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중개체가 아니라 표현행위와 관련한 편집권자로서의 지위 즉,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플랫폼사업자 간 표현의 자유 분쟁,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소비자 간 표현의 자유 분쟁에 어떠한 법리가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³⁴⁾ 이는 거대

34) 이에 관한 내용이 쉽지 않고 지면의 제약도 있어 본문에서 다루지 못하였으나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연방대법원은 적어도 정부에 대한 관계에서 플랫폼사업자는 사적 표현의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소비자 간의 관계는 사인 vs. 사인의 관계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로 연결된다. 미국에서 대사인적 효력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이 국가와 일정한 법적 관련이 있는 경우 개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의제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밝힌 바는 없으나, 어떤 개인의 사적 재산에서 제3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는 극히 한정적이다(이에 관해서는 조영승, 앞의 논문 <각주 24>, 22~23쪽). 한편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사법상의 일반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다수설인데, 결과적이고 사후적으로 일반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위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악성이 심각한 허위정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플랫폼 내 팩트체크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효과와는 구별되는 점이 있을 것이다.



플랫폼을 공적광장으로 볼 수 있는지, 공적광장 이론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정부언론 이론의 적용 가능성³⁵⁾ 등이 헌법적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3) 가짜뉴스는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대량 양산되고 있어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커다란 사회적 해악이 발생한 이후가 되어버린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논쟁이 되는 정보가 허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양극화와 진영논리에 따른 확증편향, 이를 중첩하여 가속화하는 필터 버블 현상들이 겹쳐 무엇이 진실인 것인지의 문제는 등한시되고 상당한 정도로 상당한 기간 노출되는 상황에서 마치 신앙과도 같은 사실이 될 수 있다. 생각건대 가짜뉴스가 가지는 사회적 해악성이 팩트체크로 인한 부작용을 압도하는 상황에서는 ‘플랫폼 내 팩트체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미연방대법원의 사례는 팩트체크를 둘러싼 규범적 판단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나아가 보다 섬세

35) 이에 관하여 본문에서 언급한 바는 없으나, 머시 사건에서 제5순회 형소법원은 이를 직접 적용하고 있다. <각주 6> 참조.

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 중으로 파악된다. 규범 제고의 차원에서 팩트 체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일반적 규율보다는 구체적 규율의 형태로 진행하고, 규율 주체와 대상, 방법이 중립적일 수 있도록 섬세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 유산의 일신전속성

이성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1. 2024년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항공기 참사로 수많은 이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고 수습과 장례 절차 등을 위해 그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하나의 소식은, 유가족들이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희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관계 당국 등에 건의하였으나 해당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그 계정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계정 아이디 등의 정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정보로서 이는 아무리 유가족의 요청이라 해도 공개될 수 없다는 점이 그 주된 근거였다. 그리고 계정 정보의 공개 대신에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개자료에 대한 백업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또 직계 가족이 프로필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부고 등을 알릴 수 있는 추모 프로필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물론 프라이버시 정책상 이러한 비공개 결정이 불가피함도 강조하였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제시한 근거들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소셜 미디어 계정은 비밀번호를 통해 기본적으로 타인의 접속이 통제되며 이에 담긴 내용은 타인과의 내밀한 의사소통이나 개인의 인격적 발현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리적 관점에서 문제는 생각보다 그리 단순하지 않다. 위 문제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계정 아이디 등의 정보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라 말

하였지만, 사실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바는 소셜 미디어 이용계약의 내용으로서 존재하는 희생자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가 희생자로부터 상속되었다는 것이다. 양도할 수 없는 것이 필연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라도 상속될 수 있다.

이에 문제는 상속을 저지하는 일신전속성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민법 제1005조가 이를 규율한다. 즉 동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면서 그 예외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상속법상 포괄승계의 원칙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처리하여 상속재산과 관련된 채권자들과 상속인들의 이익상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려는 제도적 원리이다.¹⁾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더불어 채무도 함께 승계되며, 개별적인 권리들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이전과 함께 계약상 지위 등도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반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인격적 이익 등은 예외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바, 이렇게 민법 제1005조가 재산적 이익과 일신전속적 이익 인지에 따라 상속 가능성을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상속법상 포괄승계 여부를 가르는 일신전속성이라는 기준이 그리 분명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재산적 이익과 비재산적 또는 인격적 이익이 혼재되어 있을 때 그 일신전속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 보면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물건 중 일기장이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의 경우가 그러하다. 일기장이나 사진첩 자체의 물건성 및 재산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의 대상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 그 안에 담긴 내밀한 인격적 이익을 중점에 두고 고려하면 이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그 상속이 부정되어야 할 것 같다. 이때 이렇게 혼재된 일신전속성만을 근거로 일기장이나 사진첩의 상속을 부정함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인적 가치와 직접 관련됨을 이유로 하여 포괄승계를 부정함은 오히려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예컨대 피상속인은 자신의 일기장이나 사진이 개인적인 이유로 상속인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관리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격적 내용이 포함된 유산의 상속이 반드시 피상속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에 대해 우리가 쉽사리 그 침해를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서두에서 언급한 소셜 미디어 계정 등 이른바 디지털 유산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람의 죽음 뒤 남겨진 것들이 갖는 특질에 따라 그것의 승계 자체가 부적당해 보일 때, 특히 그 남겨진 것들에 재산적 가치와 함께 인격적 특수성이 지배적 요소

1)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결정;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로 작용할 경우 상속 가능성 자체가 의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산이란 사실 상속법에 규정된 개념은 아니며, 이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 충분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에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념 정의의 시도는 어찌 보면 상속법상 포괄승계의 원칙하에서 디지털식 정보 기술체계를 배경으로 한 상속대상들의 개별적인 승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개략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디지털 유산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디지털 정보들과 디지털식 정보기술체계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총체이다. 여기에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정보들과 온라인상의 정보들 자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등의 제공자 등과 맺은 계약상 내용 및 지위 등도 포함된다. 즉 피상속인 소유의 하드웨어에 저장된 정보와 더불어 온라인상 서비스 제공자 소유의 저장수단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상속인의 접근 권한도 디지털 유산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하드웨어 내지 디지털식 정보저장장치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유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됨에 따라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도 자동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의문이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피상속인과 온라인상의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상의 내용들과 지위가 승계될 수 있는지이다. 상속법상 포괄승계원칙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위의 이전까지 포함하므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온라인상의 서비스 제공자와 맺은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함에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온라인상의 소셜 미디어 등에서 발생한 정보들 자체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고 그의 소유권에 종속되므로, 그 정보들이 아무리 피상속인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바로 이전될 수 없다. 그렇다면 상속인에게 계정접속을 요구할 권리 내지 계약상 지위를 상속받을 가능성이 남는데,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 지위에 일신전속적 요소는 없는지, 즉 이 계약상 지위의 포괄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이와 같은 법리적 문제와 관련하여 2018년 독일 연방대법원이 소셜 미디어 계정의 상속 여부에 관해 판단한 내용은 여러모로 시사점이 있다. 동 판결²⁾의 경과와 내용을 상속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본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베를린의 어느 한 지하철역에서 15세의 소녀가 선로를 따라 들어오는 지하철에 치여 숨졌다. 소녀의 자살 여부가 문제 되었고, 소녀의 상속인인 부모는 소녀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그 문제에 관한 실마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그녀의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그 계정이 추모계정상태로 전환되어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추모계정은 이용자의 사망사실에 대한 증명이 제출되었을 때

2) BGH, Urteil v. 12. 07. 2018 – III ZR 183/17 (BGHZ 219, 243) = BGH NJW 2018, 3178.

가능한데, 소녀의 부모는 소녀가 이용하던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증명을 제출한 바 없었다. 부모는 여러 번 제공자에게 계정접속을 요구하였으나, 제공자는 이용약관상의 이유와 원칙적으로 사망한 이용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는 근거로 거부하였다. 결국 부모는 소녀의 소셜 미디어 계정의 상속이 가능함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정접속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주장 속에서 소셜 미디어 계정의 상속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상속인인 부모에게 피상속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이 상속된다고 보아 상속인에게 그 계정에 대한 접속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였다.³⁾ 상속법상 포괄승계의 원칙을 규정한 독일 민법 제1922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셜 미디어 제공자와 맺은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다. 이 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에 계정접속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와 관련된 디지털 유산 안에 존재하는 인격적 내용의 정보들에 대해서 포괄승계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제1심 법원은 디지털 유산 중에서 재산법적인 부분만 상속될 뿐이라는 견해를 배척하였는바, 그 재산법적인 부분의 성격을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을뿐더러 그러한 구별은 다른 상속법 규정들⁴⁾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디지털 유산과 아날로그 유산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편지나 일기장은 거기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상속되는 데 반해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상의 메시지들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임대인이 임차인이었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임차목적물에 고도로 인격적인 물건들이 존재하는지와 상관없이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게 제2심 법원 역시 포괄승계원칙에 의해 소셜 미디어 계정이 상속될 수 있는 논거를 살피면서도 결론적으로 그 상속을 부정하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비록 소셜 미디어 계정에 재산적이거나 고도로 인격적 가치를 지닌 내용들이 뒤섞여 존재하지만 포괄승계원칙에 따라 그것들이 상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독일 통신법 제88조 제3항⁵⁾ 때문에 이 결론이 관철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⁶⁾ 제2심 법원은 만약 상속이 인정되게 되면 동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피상속인의 통신 상대방이 갖는 통신비밀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았다. 상속인은 해당 통신에 참여하지 않았는바, 이에 그는 통신비밀이 지켜져야 할 타인에 해당하며, 또한 그 통신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상속인의 접속을 허용할 수는

3) LG Berlin, Urteil v. 17. 12. 2015 – 20 O 172/15 = LG Berlin ZD 2016, 182.

4) 이와 관련하여 독일 민법 제2047조 제2항(제1심 법원은 여기에 피상속인의 인격 관계와 관련된 서류들의 상속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봄)과 제2373조 제2문(제1심 법원은 여기에 가족문서와 가족사진들의 상속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봄)이 제시되었다.

5) 동 조항에 따르면 통신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통신 서비스업자는 통신 서비스의 사무적 조달과 그 기술적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타인에게 통신의 내용이나 자세한 사정에 대해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

6) KG, Urteil v. 31. 5. 2017 – 21 U 9/16 = KG ZUM-RD 2017, 524.

없다고 한다. 이에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추모계정상태를 만든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부모의 친권 행사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으며, 이로부터 소셜 미디어 계정접속권이 도출되지도 않는다고 하였고, 부모의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도 그러한 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제2심 법원의 판결을 반박하며 결론적으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접속권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보았다. 즉 상속법상 포괄승계원칙에 따라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용계약상 계정에 접속할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용약관상 제3자에게 접속정보의 전달이 불가하지만 이 약관조항에 의해 상속까지 부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나아가 추모계정상태로의 전환에 대한 규정이 계정의 상속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추모계정상태로의 전환에 대한 약관조항에 의해 상속법상 포괄승계원칙이 보장되지 않게 되고 이에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용계약의 성질로부터 계정의 상속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용계약상 서비스 제공자의 급부의무는 이용자의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등 기술적인 것들일 뿐이므로 여기에 고도의 인격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생성한 내용들에만 인격적 가치가 존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용계약관계가 계정소지자에게만 국한되고 그만이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인적 관련성이 높긴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상속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통신 상대방이 갖는 인격권의 보호를 이유로 상속을 부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피상속인과 그 통신 상대방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의 보안이 상속인에게까지 지켜져야 할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이용자의 계정에 담긴 내용에 따라, 즉 그 내용이 재산법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계정의 상속을 긍정하는 견해 역시 배척했다. 제1심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다른 상속법 규정들이 인격적 가치가 들어 있는 서류나 편지의 상속 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이 상속대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나아가 그 내용이 피상속인 소유의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와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속의 방식만이 달라질 뿐(전자의 경우 저장장치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상속되고, 후자의 경우 계약상 지위의 승계를 통해 상속이 이루어짐), 상속 여부 자체를 달리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이상의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며 서두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무엇보다 상속법상 포괄승계원칙의 실질적 존재이유는 포괄적인 승계를 통해 상속재산의 누락을 방지하고 명확한 상속관계를 형성하여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등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상속재산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합리적 이익조정을



위한 것일 뿐이지, 상속재산 전체를 포괄적 형태의 것으로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나 개개의 상속재산이 갖는 특질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상속법상 포괄승계원칙이 법기술적 성격을 강하게 보이는 점에 비추어, 포괄승계를 인정했을 경우와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 될 수 있는 각각의 결과들에 대한 다양한 형량과정이 포괄승계원칙의 존재를 이유로 그저 축소될 필요는 없다. 그 예외인정과 관련된 형량과정으로서, 우리 민법 제1005조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포괄승계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이미 그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일신전속적인 것들은 보통 신분관계와 관련된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당사자의 개별적 능력, 특수한 신뢰 등이 필수적 전제가 된 경우라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포괄승계원칙을 규정한 조문 상의 표현(특히 “재산”)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재산법적 법률관계의 승계만이 포괄승계원칙의 적용을 받고, 이에 비재산적 법률관계의 상속성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도식적 이해가 충분히 주장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적/인격적 법률관계라는 도식은 포괄승계원칙의 적용을 검토할 때 법리적 논의의 시작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 최종적 결론을 보여 주지는 못한다. 이에 포괄승계원칙의 예외설정기준으로 일반적인 표지를 설정하더라도, 포괄승계의 실질적 존재이유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승계가 되었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계당사자의 이익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승계 여부를 정당화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소셜 미디어 이용계약상 지위의 상속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해야 하는, 통신 상대방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급부에 관한 부분이 문제 될 수 있다. 즉 메시지를 작성하고 열람하는 것과 관련된 급부 내용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 소셜 미디어상 통신 상대방과의 소통은 그 내용에 따라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 간 친목 도모를 위한 경우처럼 인격적 가치만을 가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 개인정보를 상속인이 열람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율상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일신전속적 가치가 혼재할 가능성에 직면하여 법적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독일 연방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편지의 상속성으로부터의 유추이다. 한 사람의 인격적 정보가 생전에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와 달리 상속에 의해 인격적 가치가 승계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 편지의 상속성으로부터 유추를 통해 도출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저장장치에 계정상의 정보를 저장해 두었다면 상속에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 정보가 아직 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부정하는 것은 그저 우연적인 저장장소 설정에 따라 실질적 내용의 상속 여부가 달라져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소셜 미디어 계정의 상속을 긍정하는 것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편지의 상속성만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 자체의 상속성을 온전하게 정당화하기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편지의 상속은 상속인이 그 내용에 대한 열람만 가능하며 다시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답장을 쓰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편지의 상속 자체는 의사소통구조에서 수동적인 부분에만 관련된다. 이에 반해 소셜 미디어 계정 자체의 상속은 열람기능뿐만 아니라 작성기능의 승계까지 허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기에 적극적인 의사소통구조의 승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것은 통신 상대방의 신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부분을 편지의 상속성으로부터 유추하는 것만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소셜 미디어 이용계약상의 지위에서 도출되는 기능들을 분리하여 - 이미 받은 편지를 그저 꺼내어 읽어볼 수밖에 없듯이 - 적어도 의사소통구조의 수동적 측면만 상속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과 연관된다. 그래서였을까, 계정의 상속을 긍정한 위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후, 2019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계속 판결주문의 이행을 미루고 있었다. 상속인들에게 계정 자체의 승계 및 열람을 거부하고,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14,000장 분량의 PDF 파일)를 따로 USB에 저장하여 상속인들에게 넘겨줬을 뿐이라고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렇게 한 이유는 계정에 로그인하여 열람만 가능하게 하는 수동적 모드의 설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상속인들에게 계정접속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하는 소통이 가능해져 위험하다



고 보았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계정상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직접 열람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판결주문대로 계정접속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020년 독일 연방대 법원은 이러한 집행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가 상속인에게 PDF 파일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정에 대한 직접적인 접속 및 열람이 피상속인처럼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⁷⁾ 그리고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그 계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피상속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의 상속 여부와 관련된 정당화 근거들을 간략하게나마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당화 근거들을 축으로 삼아 구체적인 포괄승계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며 여기에 사실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에 일신전속적인 인격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상속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이용계약상의 지위가 상속됨을 인정하여 상속인에게 온전한 열람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능과 사용기간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을 적어도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일신전속성과 상속 여부 자체에 관해 커다란 일도양단식의 해결책보다는 구체적인 상속 범위로 펼쳐지는 스펙트럼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

7) BGH, Beschluss v. 27. 8. 2020 – III ZB 30/20.

틱톡 ‘블랙아웃 챌린지’와 10세 소녀의 죽음

TikTok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유 외국변호사(캘리포니아 주), 백지원 변호사

이 글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안타까운 사고로 닐라를 잃은 앤더슨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 세계적인 거대 기업 틱톡(TikTok)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앤더슨 가족에게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아무쪼록 앤더슨 가족의 용기 있는 결단이 소셜 미디어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1. 틱톡에서 유행하던 ‘블랙아웃 챌린지’와 닐라 앤더슨의 사망

사건은 2021년 12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인 닐라 앤더슨(Nylah Anderson)이 살고 있던 펜실베이니아 주는 여느 때와 같이 추수감사절 이후 곧 다가올 성탄절의 분위기를 만끽하며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 닐라는 그날도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사용해 틱톡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닐라의 틱톡 계정 ‘추천 페이지(For You Page)’에 ‘블랙아웃 챌린지(Blackout Challenge)’ 관련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추천 페이지는 틱톡을 전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게 한 기능 중 하나이다. 사용자가 틱톡 앱을 열면, 틱톡은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한 사용자의 관심에 맞추어 일정한 영상 콘텐츠

츠들을 추천 페이지에 띄운다. 틱톡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연령, 위치, 과거 시청 내역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각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영상 콘텐츠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블랙아웃 챌린지는 당시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던 틱톡의 영상 콘텐츠 중 하나였다. 블랙아웃 챌린지 영상들은 어린이들에게 집 안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조른 후 ‘기절’하는 도전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었다.

그날 닐라의 틱톡 계정에 또래 친구들 사이에 유행 중인 블랙아웃 챌린지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닐라는 추천 페이지에 잠시 떠오른 영상을 여느 때처럼 그냥 넘겨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 닐라는 영상이 부추기는 ‘도전’을 감행해 보기로 결정했다. 어둡고 비좁은 침실 옷장 안에서, 닐라는 ‘기절’하기 위해 스스로 목에 가방 끈을 감았다. 어머니 타와이나 앤더슨(Tawainna Anderson)이 닐라를 발견했을 때 닐라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닐라는 집중 치료 끝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닐라의 나이는 고작 열 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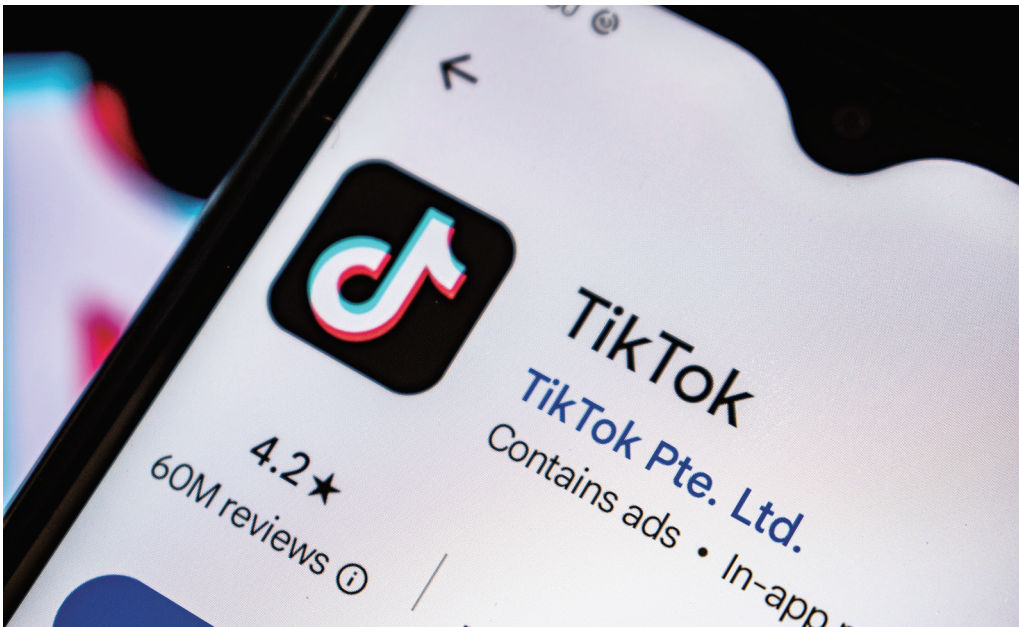
2. 틱톡에 대한 앤더슨 가족의 손해배상청구

닐라의 어머니 타와이나 앤더슨(이하 “원고”)은 ‘틱톡’의 운영 회사들인 틱톡(TikTok Inc.)과 바이트댄스(ByteDance Inc., 이하 틱톡과 총칭하여 “피고들”)를 상대로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구 연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E.D. Pennsylvania)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제시한 청구의 근거는 ① 피고들이 틱톡 앱과 알고리즘의 제조·설계자 내지 판매자로서 부담하는 무과실책임(Strict Products Liability), ② 피고들이 틱톡 앱과 알고리즘의 제조·설계자 내지 판매자로서 부담하는 과실책임(Negligence), ③ 펜실베이니아 불공정 거래관행금지 및 소비자보호법(Pennsylvania Unfair Trade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 Law)과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보호법(California Consumer Legal Remedies Act) 위반, ④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Wrongful Death) 등이었다.

요컨대,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이 틱톡 앱과 알고리즘에 닐라와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배포하여 수익을 올렸고, 이를 은폐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관행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었다.

원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은 블랙아웃 챌린지 영상의 출판자(Publisher)가 아니라 틱톡 앱과 알고리즘의 제조·설계·판매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고들의 책임은 제3자의 영상을 ‘출판’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영상들을 어린 아이



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는 앱과 알고리즘을 제조·설계·판매한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이 소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제230조에 따른 면제를 부여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문제의 통신품위법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할 것이다.

원고들이 1심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놀랍게도 틱톡에는 나라를 죽음에 이르게 한 블랙아웃 챌린지 외에도 수많은 위험한 ‘도전’들이 유행하고 있었다. 거울에 인화성 액체로 그림을 그린 후 불을 붙이는 ‘파이어 미러 챌린지(Fire Mirror Challenge)’, 지나가는 행인에게 총으로 폴리머 구슬을 쏘아 대는 ‘오르비즈 슈팅 챌린지(Orbeez Shooting Challenge)’, 우유갑으로 산을 쌓고 흔들거리는 구조물을 오르내리는 ‘우유갑 챌린지(Milk Crate Challenge)’ 등, 수많은 ‘도전’들이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심지어 블랙아웃 챌린지로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21년 1월 21일에는 이탈리아의 10세 소녀가, 2021년 3월 22일에는 콜로라도의 12세 소년, 2021년 6월 14일에는 호주의 14세 소년, 2021년 7월에는 오클라호마의 12세 소년이 틱톡 추천 페이지에 뜬 블랙아웃 챌린지를 따라 하다 불행하게 사망했다.

틱톡의 사용자는 전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고, 그 중 약 28%가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다. 틱톡 추천 페이지에 뜨는 ‘도전’ 영상들로 인해 전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의 운영자들은 어떠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었다.

3. 연방법원의 1심 판결

예상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역시나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른 면제를 주장하였다. 위 법령의 원문 및 국문 번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c)(1) 상호작용형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의 출판자나 발언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c)(1)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e)(3) 이 장의 내용과 양립 불가능한 주(州) 법률이나 지방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책임을 부과할 수도 없다.

(e)(3) No cause of action may be brought and no liability may be imposed under any State or local law that is inconsistent with this section.

(f)(2) “상호작용형 컴퓨터 서비스”란 여러 사용자가 컴퓨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접근을 제공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서비스, 시스템 또는 접근 소프트웨어의 제공자를 의미하며, 이에에는 특히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과 도서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f)(2) The term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means any information service, system or access software provider that provides or enables computer access by multiple users to a computer server, including specifically a service or system that provides access to the Internet and such systems operated or services offered by libraries or educational institutions.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른 면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가 상호작용형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이고 ② 원고가 피고를 정보의 출판자 또는 발언자(publisher or speaker)로 취급해야 하며 ③ 정보가 다른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틱톡의 운영자인 피고들이 상호작용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라는 사실 및 닐라를 죽음으로 이끈 블랙아웃 챌린지 영상이 틱톡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제작되어 게시되었다는 점은 다툼 없는 사실이었다.

쟁점은 원고가 피고들을 블랙아웃 챌린지 영상의 출판자 또는 발언자로 취급했는지 여부였다. 원고는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들이 블랙아웃 챌린지 영상의 출판자 또는 발언자로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한 영상을 어린 아이들에게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앱과 알고리즘의 제조·설계자 내지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선제적인 주장을 펼친 바 있었다. 피고들이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책임의 면제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Force v. Facebook* 등의 판례를 인용하며 “소비자의 관심사와 정보를 매칭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의 사용”은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규정하는 출판자의 기능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비록 원고가 피고들의 책임을 틱톡 앱과 알고리즘의 제조·설계·판매에 대해 묻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조·설계·판매는 결국 틱톡 앱에 올라오는 제3자의 영상들을 출판하는 행위와 불가분한 행위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영상의 출판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이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른 면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들은 닐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결론과 함께 2022년 10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닐라 앤더슨의 죽음은 그녀가 ‘블랙아웃 챌린지’를 시도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챌린지를 제작하지 않았고, 단지 이미 만들어진 챌린지를 그들의 사이트에 게시하였을 뿐이다. 피고들의 알고리즘은 챌린지를 이에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이었다.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의 콘텐츠를 홍보함으로써 피고들은 다른 이들의 콘텐츠를 출판한 것이며, 이는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책임을 면제하는 바로 그 행위에 해당한다.

4. 연방항소법원의 1심 판결 파기환송

원고는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입장과는 달리, 피고들에게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른 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인용한 2024년 미국 대법원의 *Moody v. NetChoice LLC* 판결을 언급한다. 위 판결은 제3자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대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주(州) 법률이 수정헌법(The First Amendment) 제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제3자의 발언을 취합하는 방식에



대한 편집적인 판단(editorial judgement)을 반영하는 경우, 이는 플랫폼 자체의 표현적인 결과물”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항소심 법원은 틱톡과 같은 상호작용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의 표현행위 또는 콘텐츠의 출판과 관련된 경우에만 통신품위법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표현행위나 콘텐츠(1차 발언, first-party speech)와 관련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항소심 법원은 위 *Moody v. NetChoice LLC* 판결에 따라, 틱톡의 알고리즘은 제3자의 콘텐츠를 조합하여 생성한 동영상 스트림을 흥미를 가질 만한 사용자들에게 추천하고 있고 이는 틱톡 자체의 표현적인 결과물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틱톡의 알고리즘이 제3자의 발언을 선택, 구성 및 조직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틱톡의 자체적인 ‘표현적 활동’으로서 1차 발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피고들에게는 통신품위법에 따른 면제가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배제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후 약 2년 후인 2024년 8월 27일, 1심 판결을 파기환송(vacate in part and remand)하는 판결을 내렸다.

5.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의의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기업의 책임

닐라의 죽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루고 있는 이 사건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의 매체 환경 속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부담하여야 하는 새로운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필자의 기억에 따르면 1990년대 중후반,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에서의 표현활동은 대개 동호회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본인의 글을 게시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에도 동호회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있었지만, 이들은 단지 게시판에 게시된 부적절한 글을 삭제하거나, 문제가 되는 회원에게 강제 탈퇴 등의 제한을 가하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 즉 과거의 매체들은, 틱톡과 같은 현대의 거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달랐다.

통신품위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6년에 제정되었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언급하고 있듯이, 닐라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매체에 게시되는 발언이나 콘텐츠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과거의 매체 운영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는 제3자의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발언 또는 콘텐츠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매체의 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상에 따른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매체들, 특히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이들과 상황이 다르다. 거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능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이제는 소셜 미디어 ‘앱’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수준에 이르렀다.

틱톡의 추천 페이지와 같은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단순한 표현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새로운 사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용자들의 연령, 거주지, 관심사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플랫폼들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알고리즘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사업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일부 플랫폼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들이 유포되는 것을 모른 척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닐라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더 이상 사용자들에게 표현을 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소극적인 운영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으며, 온갖 첨단 기술로 무장한 알고리즘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상을 추천하고 사용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통신품위법의 제정 당시와는 달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 자체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는 대략 4천만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문제가 된 틱톡의 회원만 해도 10억 명이 넘는다.



닐라의 사건을 다룬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렇듯 변화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의 역할 및 사업 전략과 현대의 기술을 포착하고, 그에 따라 30여 년 전 제정된 통신품위법을 새롭게 해석한 선도적인 시도라고 생각한다. 연방항소법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의 앱 운영과 알고리즘을 독자적인 표현 활동으로 해석함으로써, ‘블랙아웃 챌린지’와 같이 위험한 제3자의 영상을 닐라와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추천한 틱톡이 통신품위법에 따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닐라 사건을 시작으로 전세계의 더 많은 법원들이 이와 유사한 입장을 택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

인공지능 시대의 뉴스 저작권 및 공정이용 논란:

최근 미국 판례와 한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부교수



챗GPT(ChatGPT) 및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대중에게 소개된 이후,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말 오픈AI(OpenAI)는 AP통신 및 악셀 스프링어(Axel Springer)와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협약을 맺었으며, 구글 또한 2024년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뉴스 코프(News Corp)와 인공지능 콘텐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¹⁾ 한편, 미국의 대표적 신문사인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2023년 12월 오픈AI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²⁾ 이듬해인 2024년에는 뉴욕 데일리

1) <https://www.reuters.com/technology/google-pay-up-6-mln-news-corp-new-ai-content-information-reports-2024-04-30/>

2) <https://www.nytimes.com/2023/12/27/business/media/new-york-times-open-ai-microsoft-lawsuit.html>



뉴스(New York Daily News),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올랜도 센티넬(Orlando Sentinel) 등의 신문사 8곳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³⁾ 미국의 경우,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 간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을 둘러싼 갈등을 개별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대응해 오고 있다. 오픈AI를 비롯한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 기업들도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업과 저작권자 간의 갈등에 관한 미국 내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의 무단 저작물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첫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 간 제기된 소송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뉴스 저작권 및 공정이용 논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인공지능의 저작물 무단 학습이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미국 최초 판결이 갖는 함의

2025년 2월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⁴⁾ 공정이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에 대한 한계 내지 제한으로 기능하고 있다.⁵⁾ 이 판결에서도 피고인 인공지능 기업은 원고 기업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으로 ‘공정이용’을 주장하였다. 해당 법원은 원고의 부분 약식판결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의 약식판결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⁶⁾

비록 이 판결이 뉴스 저작물에 관한 판결은 아니었지만, 인공지능의 저작물 무단 학습과 이를 둘러싼 공정이용 논란을 최초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미국 판결이다.

³⁾ <https://www.theverge.com/2024/4/30/24145603/ai-openai-microsoft-new-york-daily-news-sue-copyright>

⁴⁾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2025 WL 458520 (D. Del. Feb. 11, 2025).

⁵⁾ Sang, Y., Auferheide, P., & Kim, M. (2021). Fair use in practice: South Korean film directors' copyright understan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5, 927–949.

⁶⁾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2025 WL 458520 (D. Del. Feb. 11, 2025).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명 법률 연구 플랫폼인 웨스트로(Westlaw)의 소유주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는 인공지능 기반 법률 연구 서비스 신생 기업인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웨스트로의 독점적인 ‘헤드노트(Head Note)’⁷⁾를 불법적으로 복사하여 검색 엔진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제3자 회사를 통해 웨스트로의 ‘헤드노트’를 참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로스 인텔리전스의 검색 도구를 훈련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판결에서 스테파노스 비바스(Stephanos Bibas) 판사는 로스 인텔리전스의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인공지능의 학습과 공정이용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축소하기도 한다.⁸⁾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판결이 앞으로 나올 수많은 판결에 인용되고 양측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해당 판결에서는 웨스트로의 ‘헤드노트’가 저작권의 대상인지 아닌지, 로스 인텔리전스의 훈련 단계에서 이루어진 복사 행위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로스 인텔리전스가 웨스트로의 ‘헤드노트’를 이용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것이 웨스트로 소유주인 톰슨 로이터의 저작물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시장을 대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⁹⁾ 이 판결에서 판사는 웨스트로의 ‘헤드노트’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큼 독창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헤드노트’가 기본적으로 법원 판결의 핵심을 요약하거나 개요를 짧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법원의 판결문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공유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법원 판결의 핵심을 간결하게 인용하면서 제시하는 ‘헤드노트’가 저작권에서 요구하는 독창성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에서 판사는 웨스트로의 ‘헤드노트’가 판결문에서 어느 부분을 인용할 것인지를 선택한 것으로 독창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 시 미국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이다. 이 판결에서도 해당 법원은 “그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

7) ‘판례 요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헤드노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8) <https://www.jdsupra.com/legalnews/ai-training-fair-use-and-the-burdens-of-1030642/>

9) <https://www.jdsupra.com/legalnews/ai-training-fair-use-and-the-burdens-of-1030642/>

을 위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사용의 목적과 성격¹⁰⁾을 검토하였다. 이 판결에서 로스 인텔리전스가 웨스트로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상업적 목적이었고, 해당 법원은 그 이용이 변형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저작물의 이용이 상업적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 점이 로스 인텔리전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해당 법원은 ‘헤드노트’가 최종 이용자에게 그대로 복제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도구를 훈련시키는 중간 단계에 활용된 것일 뿐이라는 ‘중간 복사’와 관련된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중간 복사가 공정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이러한 주장 또한 기각하였다.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이다.¹¹⁾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작품일수록 더 보호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에서 해당 법원은 톰슨 로이터사가 저작권을 가진 웨스트로의 ‘헤드노트’가 창의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창의성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는 톰슨 로이터의 ‘헤드노트’가 창작적인 요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쉽게 인정되는 다른 저작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두 번째 요소에 대한 판단은 로스 인텔리전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정이용 판단의 세 번째 요소는 “사용된 부분의 양과 그 중요성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전체와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정도”이다.¹²⁾ 법원은 공정이용 판단 시 이용된 자료의 양뿐 아니라 그 질적 가치와 중요성도 함께 고려해 왔다. 이 판결에서 판사는 기존 *Authors Guild v. Google, Inc.* 판결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복제 과정에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어 경쟁적 대체물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의 양과 중요성이다”라고 주장했다.¹³⁾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당 판결에서 판사는 로스 인텔리전스가 최종 이용자에게 제공한 결과물에 웨스트로의 ‘헤드노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고, 로스 인텔리전스는 웨스트로의 ‘헤드노트’들을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에서 판사는 공

¹⁰⁾ 17 U.S. Code § 107

¹¹⁾ 17 U.S. Code § 107

¹²⁾ 17 U.S. Code § 107

¹³⁾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2025 WL 458520 (D. Del. Feb. 11, 2025).

정이용의 세 번째 요소는 로스 인텔리전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번째 요소는 “해당 사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¹⁴⁾ 이 판결에서 판사는 네 번째 요소가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스테파노스 비바스 판사는 결론적으로 로스 인텔리전스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웨스트로의 시장 대체물을 의도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톰슨 로이터가 자사의 법률 검색 도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이용해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인공지능 훈련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위한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면서, 공정이용의 네 번째 요소가 원고인 톰슨 로이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로스 인텔리전스의 서비스가 대중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가져다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로스 인텔리전스의 공정이용 주장을 기각하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판사는 로스 인텔리전스와 톰슨 로이터 간의 법적 다툼은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Google LLC v. Oracle America*¹⁵⁾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준 사례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로스 인텔리전스가 톰슨 로이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판결에서 판사는 공정이용 판단의 첫 번째와 네 번째 요소는 원고인 톰슨 로이터에 유리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들은 피고인 로스 인텔리전스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언급하면서, 네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였다. 이로써 로스 인텔리전스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남은 사실적 쟁점은 톰슨 로이터의 저작물의 일부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적시에 생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고, 저작권의 유효성과 관련된 사실적 판단은 배심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¹⁶⁾ 이 판결이 앞으로 있을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존 저작물 학습과 이를 둘러싼 공정이용 항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저작물을 중간 복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의 논의는 향후 유사한 공정이용 판결들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¹⁴⁾ 17 U.S. Code § 107

¹⁵⁾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593 U.S., ____ (2021).

¹⁶⁾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2025 WL 458520 (D. Del. Feb. 11, 2025).

지상파 방송 3사와 네이버 간 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

그동안 국내 언론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 뉴스 배포 및 소비를 둘러싼 주도권을 빼앗기고 종속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¹⁷⁾ 포털이 새롭게 시장에 등장한 이후 언론사들은 뉴스 콘텐츠의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노력 대신 포털상에서 클릭 수를 통해 올리는 수익에 더 집중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널리즘 생태계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지금 포털과 언론 간에 형성되어 온 상호 의존과 갈등을 둘러싼 논의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언론을 둘러싸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학습에 신문사들의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언론사들은 포털에 종속되어 온 과거와는 달리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인 KBS, MBC, SBS는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가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¹⁹⁾ 한국방송협회는 이미 2023년 12월에도 국내외 주요 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발송한 의견서에서,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KBS, MBC, SBS 등 한국방송협회 회원사의 과거 및 최신 뉴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뉴스 콘텐츠 및 영상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을 금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²⁰⁾ ‘한국방송협회 AI 태스크포스’는 네이버뿐 아니라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한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²¹⁾

뉴스는 공공재이자 상품이다.²²⁾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저작물에 비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저작권 인정의 정도를 둘러싼 논쟁이 존재한다.²³⁾ 현재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다만 국내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에 대해서 다양한

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20698.html>

18)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7887>

19) http://www.kba.or.kr/bbs/board.php?bo_table=m02_06&wr_id=298

20) http://www.kba.or.kr/bbs/board.php?bo_table=m02_06&wr_id=278&page=2

21) <https://www.mk.co.kr/news/it/11217242>

22) 상윤모, (2024).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과 뉴스 저작권에 대한 고찰, <계간 저작권>, 제37권 제호, pp95-134. 참조

23) Slauter, W. (2019). Who owns the news? A history of copyright. Stanford University Press.

저작권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법 제7조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 제한 관련 조항 중 제26조나 제27조 등도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제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우리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법리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각급 법원에서 공정이용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됐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²⁴⁾ 국내에서는 포털을 중심으로 뉴스 유통 및 소비문화가 형성되어 오면서 뉴스에 대한 저작권 인식 문화가 더디게 형성되어 온 편이기도 하다. 더욱이, 국내 주요 포털들과 언론사들 사이에는 뉴스 제휴 약관 관련 불공정 논란이 지속돼 온 가운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을 둘러싸고 논란이 더욱 커졌다. 최근 국내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그 판결 결과에 따라 뉴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글을 마무리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쟁점은, 인공지능의 학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사가 ‘변형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공정이용 판단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는 종합적으로 고려되지만, 네 번째 요소인 “해당 사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부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및 해외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 간 뉴스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들이 성사되고 있다는 점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시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등의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4) 이일호, (2023).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황과 과제-판례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제36권 제1호, pp151-192. 참조

톰슨 로이터와 로스 인텔리전스 간의 다툼에서 로스 인텔리전스의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니었으며, 웨스트로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이 판결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공정이용 법리가 미국과 비교하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국내에서는 2024년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의 판례가 두 건 나왔다.²⁵⁾ 그런 만큼, 뉴스 저작권 이슈와 공정 이용 법리 또한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4년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언론 유관 단체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시대 뉴스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²⁶⁾ 한편, 국내에서 인공지능의 뉴스 콘텐츠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학습 데이터가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뉴스 저작권자 간의 뉴스 이용 계약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²⁷⁾ 앞으로 국내 법원도 인공지능의 뉴스 저작물 학습과 관련된 판결 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논의된 미국 법원 판결의 쟁점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판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뉴스 콘텐츠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뉴스 콘텐츠의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업과 언론사 간 뉴스 콘텐츠 활용과 수익 배분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

25)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2603>

26) <https://www.kpf.or.kr/front/research/selfDetail.do?seq=598871>

27) 김대규·홍순건, (2024), AI 학습용 데이터로서 뉴스 저작물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언론과 법>, 제23권 제3호, pp137-177, 참조

언론조정의 의미를 돌아보며: 피해구제를 넘어 언론 신뢰의 자양분으로

민영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교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서울제8중재부 소속 언론중재위원으로서 많은 사건들을 접하며, 언론보도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들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숙고하는 귀중한 경험을 했다. 한편으로는 언론 규범 및 이론과 현실의 관행 사이에 존재하는 큰 격차를 실감했지만, 언론학자로서 언론 현장과 이용자의 관점을 더 깊이 배우는 계기이기도 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공정하게 발언과 경청 기회를 제공하고 입장의 차이를 좁혀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조정절차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논거로 토론하며 그 결과로 도출된 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요체이자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이 절차에 대한 존중과 신뢰 없이는 언론조정중재제도 자체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회도 축소될 것이다.

다른 언론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건 심리에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맞추려는 치열한 고민이 수반된다. 언론학자로서 조정에 참여하며 언론의 영향력과 언론보도의 맥락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피해 정도와 심각성을 파악하려고 특별히 노력했다. 또한 언론 자유는 언론이 수행해야 하는 공익적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전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개별 심리에서 해당 보도의 공공성, 공익성,

진실성 등을 면밀히 가늠하려고 했다. 우리 중재부가 담당했던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세 가지 사례를 되짚어보며, 언론조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

[첫 번째 조정사례]는 ‘어린이집 급식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보도에서 기사 주제와는 무관한 자료화면(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하원 지도 장면)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이다. 보육 이슈는 워낙 민감한 사회적 사안이라 관련 보도의 영향력은 즉각적일 수 있는데, 해당 어린이집 명칭이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되어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도 컸다고 했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의 사회적 평판과 이미지가 추락됐다고 호소하면서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의 추가보도를 피해구제책으로 요청했다.

피신청인인 언론사는 자료화면을 동의 없이 사용한 점은 인정했지만, 해당 영상이 전국 어린이집 현황을 소개하는 중립적인 맥락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신청인 기관의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이미 신청인의 불만을 접수하여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영상을 교체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있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내용과 무관한 영상이 사용된 데다가 기관명이 특정됐으므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영상이 중립적인 맥락에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기사 전체의 논조를 감안할 때 신청인의 평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취재보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 관련 영상의 재노출을 철저히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측이 동의하여, 해당 언론사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 홈페이지 다시보기 및 IPTV 서비스에서 신청인 기관 화면을 사용하지 않고 방송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해당 영상을 영구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보육 관련 보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무관한 이미지를 동의 없이 활용하여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보도 맥락에 따라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피해는 그 규모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온전한 회복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당사자가 특정되는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보도 관련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철저히 비식별 처리를 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언론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언론조정중재사례집>에 따르면, 보도 내용과 관련 없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언론사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도 존재한다.

[두 번째 조정사례]는 보도를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정대상기사는 대학 졸업식 풍경을 사진 중심으로

보도한 소위 ‘포토 뉴스’인데, 대학 교정에서 개인정보(학과, 학번, 성명 및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판넬을 들고 졸업 사진을 촬영 중이었던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기사화했다. 더구나 기사 본문엔 대학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어 당사자가 쉽게 특정됐다. 기사화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신청인은 보도 이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신청인은 2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대리인인 부모는 피해 대비 배상액이 충분치 않다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피신청인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과할 의사를 밝혔으나, 손해배상액의 하향 조정을 원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해당 비용을 언론사가 아닌 담당 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사건 중 실제 금전배상 인용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참고: 2021년 5.4%, 2022년 1.8%, 2023년 2.1%).

당사자의 초상과 성명이 노출되어 피해가 명백하고 전문적, 윤리적 관점에서 언론사의 명백한 실책임을 고려하여, 중재부는 신청인의 청구 액수대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다. 이 사건의 경우,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중요성에 비해 보도의 공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편집 단계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언론사의 통상적인 주의와 노력조차 미흡했다. 우려되는 점은 24시간 뉴스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기사가 양산되고 언론의 게이트키퍼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조정사례에서도 영상, 음성 등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음성권 침해 등에 대해 언론사의 손해배상이 인용된 경우가 확인된다.

[세 번째 조정사례]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이다. 신청인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한 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수감자였다. 조정대상기사는 신청인이 중국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중국 현지 공안이 한국으로 수사팀을 보내 신청인이 용의자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신청인의 성명도 특정됐다.

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르기에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동명이인의 범행이며 사건 발생 시점에 자신은 배에 승선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중국 경찰로부터 자신이 해당 범죄의 용의자라고 확인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피신청인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반론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를 주로 참고하였으나 별도의 취재 과정을 거쳐 기사가 작성됐으며, 해당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직결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기에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중국 공안국이 수사팀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 경찰의 협조 하에 신청인이 중국 내 살인 사건의 용의자임을 확인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중재부는 한국 경찰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조회한 후 조정 방향을 정하고자 했다. 경찰의 서면 회신 결과 중국에서 발생한 범죄와 신청인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를 통해 ‘신청인이 살인사건의 용의자 신분으로 중국 공안에게 조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중재부가 보도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서 조정에 성공한 사례다.

범죄 관련 보도는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높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지지만, 그것이 진실성에 대한 노력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한국 언론은 유독 익명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투명하지 않은 출처의 활용(예, 경찰 관계자, 수사당국 등)은 미흡하거나 부실한 사실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는 언론 규범과 실천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취재보도 관행을 개선하는 것(예, 투명한 정보원 활용, 교차 검증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반론 제공 등)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세 가지 조정사례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공동체 구성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구제하는 것은 언론 신뢰와 밀접히 연관된다. 많은 언론학 연구가 밝혀온 것처럼



럼, 저널리즘의 전문적, 윤리적 규범에 따라 언론보도의 품질을 높이고 언론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여 언론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 요인이다. 동시에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여러 유형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역시 언론 신뢰와 직결된다. 중재위원 시절, 명백한 오보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종종 접했다. 그러나 언론사가 이용자의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반론 기회를 제공하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해당 언론사의 평판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존경과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다.

언론 신뢰는 이용자가 ‘언론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태도’로서 언론이 해당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산이다. 언론 불신이 높아지고 부정적 담론이 확산되는 시대에, 언론이 이용자와 호혜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자나 시청자의 경험을 가장 중시해야 하며 피해발생 시 더 능동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생태계가 급격히 진화하고 이용자의 매체 경험이 다양화됨에 따라 피해의 형태도 다각화되고 언론조정사건들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론 자유와 함께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할 헌법적 권리와 가치도 다면화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조정은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 언론 관행을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언론 신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은 변함없이 유효하다. 언론과 사회, 언론과 공동체 구성원이 건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속의 절차로서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다른 기사 참조, 명예훼손의 정당한 항변이 될까?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

2025년 2월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혐의로 1인 인터넷 언론사 소속 기자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언론사 기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타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사실 확인을 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유는 무엇이었을까.

I.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D 업체의 대표 피해자 C는 ○○ 엑스포 유치와 관련하여 4, 5차 PT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24. 1. 11.경 B 언론사 사무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인 피해자

C에 관한 기사를 게시했다. 피고인 A는 “C 후보(전 D 업체 대표) ‘참패한 ○○ 엑스포 PT에 관여?’ 프리젠테이션 질 낮아 몰매, C 후보 책임 없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 엑스포 유치 참패의 원인으로는 최종 PT(5차 PT)가 꼽힌다. 문제가 된 4, 5차 PT의 제작 업체는 C 후보가 대표로 있던 D 업체였으며, 호평받던 타 업체가 배제되고 몰매를 맞은 D가 최종 PT 업체로 왜 선정됐는지는 추후 보도 예정, C 후보는 당시 D 업체 책임자였기 때문에 ○○ 엑스포 참패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2. 공직선거법 위반(각종제한규정위반죄)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4. 4.경 전향 기재 언론사 사무실에서, “[단독] 진원지 확인 안 된 ‘E 후보 1.4%P 진다’에 총괄선대위원장 ‘화들짝’”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소 자체 여론조사에서 E 후보가 다른 정당 F 후보에 1.4%P 차이로 지고 있다는 말이 알려지면서”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I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해당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문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2023. 12. 10.자 기사를 전송받고,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위 전송받은 기사를 확인한 다음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이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C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III. 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가. 주요 인용 판례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

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라는 판례를 인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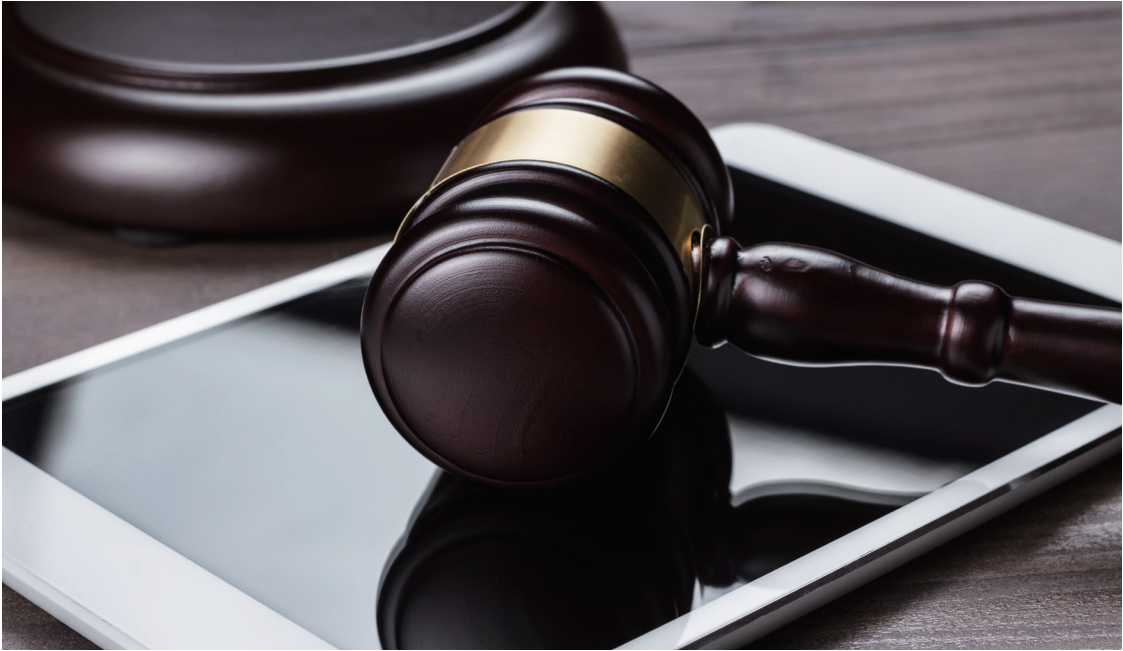
나. 구체적 판단

- 1) 법원은, ○○ 엑스포 유치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C가 과거 대표로 재직하였던 D는 위 4, 5차 PT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 2) 피고인이 참고한 타 언론사의 기사 수정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타 언론사는 2023. 12. 6.자 해당 기사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같은 달 12. 10. 종이신문에, 다음날 온라인에 각 기사를 게시했다. 그러나 타 언론사는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12. 12. 위 온라인 기사를 삭제했다. 그리고 12. 13. ‘취재에 따르면 D는 ○○ 엑스포 홍보를 위해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파리 심포지엄과 국내 현지실사 일정 부분만을 담당하였고, 문제가 된 4, 5차 PT를 제작한 업체는 타 업체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하였다.
- 3) 그 이후 피고인의 기사 작성일인 2024. 1. 11. 이전까지 4곳의 언론사에서 ‘○○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4, 5차 PT는 타 업체에서 제작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 4) 피고인은 이 사건 신문 기사를 작성·게재한 2024. 1. 11. 무렵 위 신문 기사 작성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온라인 기사를 찾아서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위 온라인 기사는 2023. 12. 12.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찾지 못하였다.
- 5) 피고인은 참조한 원본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찾지 못하였고, 이미 4곳의 언론사에 위 4, 5차 PT의 제작 업체가 타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음에도 다른 기사 등을 검색해 보는 등 신문 기사로 게재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삭제된 원본 기사와 정정보도



기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위 온라인 기사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정정보도 기사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문 기사 작성 시 참고한 언론 보도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진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앞서 인정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참고한 언론 보도자료는 이미 삭제된 이 사건 온라인 기사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7)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 엑스포 4, 5차 PT 제작 업체는 타 업체라는 내용의 다수의 기사를 제시받자, 돌연 이 사건 신문 기사를 작성할 무렵 다른 인터넷 기사를 통해 찾아본 내용은 ○○ 엑스포 4, 5차 PT를 작성할 무렵 C 후보가 D 대표인지 몰랐다고 하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C 후보가 D 대표였던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였느냐는 질문에는 '나무위키'에서 확인하였다고 답했다.
- 8) 이 사건 신문 기사에는, ▲피해자 C가 당시 D 업체에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는 내용, ▲ 피해자 C는 ○○ 엑스포 홍보영상 계약을 체결하고는 2023. 3. 28. 타 업체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기는 하였으나 당시 D 업체 책임자였기 때문에 ○○ 엑스포 참패에 대한 책



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 ▲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 유권자들은 피해자 C를 불신하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 C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9) 앞서 인정한 바처럼, ○○ 엑스포 유치 관련 PT는 모두 타 업체에서 제작되었다. 또한 4차 PT는 2023. 6. 20.에, 5차 PT는 2023. 11. 28.에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신문 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C는 2023. 3. 28. 타 업체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D 대표직을 내려 놓았다. 해당 기사는 C가 ○○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러한 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참고한 기사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새로 작성한 것이다.

10) 피고인은 기사를 게재한 2024. 1. 11. 이후 예비후보자 C의 선거 캠프의 언론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참고한 12. 13.자 정정보도 기사 내용을 전송받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에는 적어도 참조한 기사가 허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문 기사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재하여 두었다. 2024. 3월경 공천에서 탈락한 C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문 기사를 비롯하여 관련 기사를 내려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 11) 피고인은 C가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24. 1. 8.경부터 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결정되기 직전인 2024. 3. 11.경까지 C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총 9건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024. 4월 초순경 총선 무렵까지는 C와 같은 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총 12건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를 옹호하는 기사들만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공표·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고, 예비후보자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 공직선거법 위반(각종제한규정위반죄)

가. 주요 인용 결정례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 투표나 인기 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게 만드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른바 열세자 효과)가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8헌바64 결정 참조).”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였다.

나. 법원의 구체적 판단

- 1) 피고인은 2019. 7월경부터 이 부분 범행 무렵인 2024. 4월경까지 1인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자 겸 편집·발행인으로 종사하였으므로,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사의 작성 및 게재 경험이 적지 않았다.

-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금지 기간은 알고 있고 저희 끼리는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는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주의사항 등 자료를 선거 전에 받으므로 위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전부터 알고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실제로 피고인은 2024. 4. 6.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일 이전인 2024. 4. 2. 및 그 다음날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게재함에 있어 ‘해당 여론조사는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되었다’는 내용을 기사에 명시하기도 하였다.
- 4)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에 모의 투표나 인기 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식 및 비공식과 무관하게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다는 점이 명확하고, 피고인은 정당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식 여론조사의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기사로 게재하였다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8항은 ‘정당에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일 전 6일 이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설령 피고인이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3. 양형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서, 보도한 기사의 허위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기사를 본 선거구민들은 C의 후보자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C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자로 공천받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당내 경선 결과나 C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V. 판례토크

위 판례는 1인 인터넷 언론사가 난립하는 시대에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기사 작성 당시 다른 기사를 참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증 절차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다.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으로서 그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고의나 비방의 목적은 내심의 영역이므로, 그 판단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세밀하게 판시된 구체적 판단 부분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FAKE NEWS

2024 영국 사우스포트 폭동으로 본 허위조작정보의 무기화

최지현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미디어, 개발학 석사과정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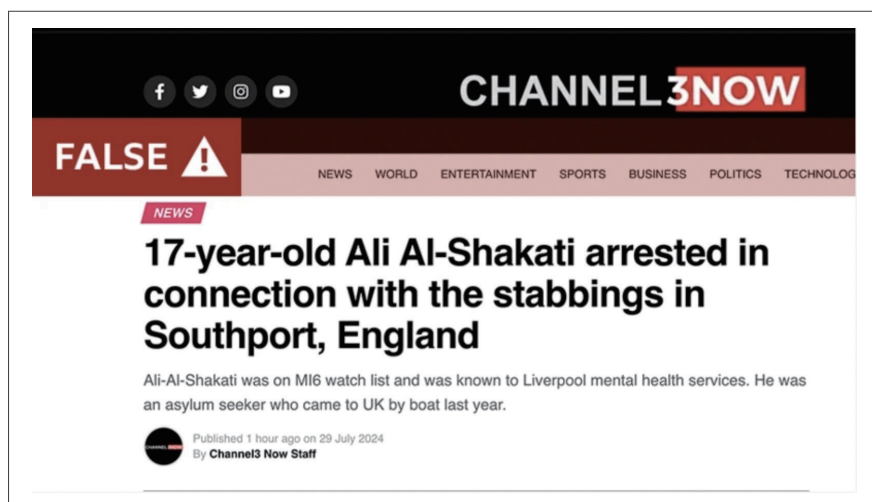
가정집은 문을 걸어 잠갔고, 상점들은 나무 판자로 출입구를 봉쇄했다. 런던 거리에 버스와 차량은 사라졌고, 무장한 사람들과 경찰들이 그 자리를 대신 가득 채웠다. 2024년 7월 31일, 영국 반이민 폭동의 시작이었다. 지난 10여 년 간 영국이 경험한 최악의 폭동(“The worst riots the UK has experienced in more than a decade”, Al Jazeera English, 2024)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이번 영국 반이슬람, 반이민 폭동은 약 9일 동안 27개의 지역에서 발생했고, 총 400여 명이 체포되었다(Sinmaz, 2024). 놀랍게도 영국 전역을 뒤흔든 이 사건의 시작은 한 허위조작정보에서 비롯되었다. 본 글에서는 작년 여름, 영국 사우스포트 홍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에서 확산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발언이 어떻게 현실에서의 사회적 분열과 폭동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에 대한 영국의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한국의 관련 규제법을 함께 검토하며,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정보의 공백을 메운 허위조작정보

시간은 폭동 발생 이틀 전, 2024년 7월 29일로 돌아간다. 영국 사우스포트(Southport)의 한 댄스 스튜디오에서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던 어린 아이들은 무단으로 들어온 17세 청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사고를 당하였다. 이 참사로 10세 미만 어린이 3명이 사망하고 8명의 어린이와 2명의 성인이 부상을 입었다(BBC, 2024a).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영국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피해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으며, 영국 국왕부터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수많은 인물이 애도를 표했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온라인 상에서는 사건 범인의 신상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퍼지기 시작하였다. 영국 법률(1933년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33) 제49조)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기소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거나 형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경찰과 언론이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2023).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이유로 미성년자인 범인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보의 공백은 허위조작정보로 빠르게 채워졌다.

시작은 X(옛 Twitter)나 틱톡(TikTok)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퍼진 범인 신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였다. 최초 유포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중적 분노를 촉발하고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목하는 것은 채널3나우(Channel3 Now)의 게시물이었다.



〈사진 1〉 가해자의 신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린 채널3나우의 기사 화면. 이후 채널3나우는 허위조작정보 배포에 따른 사과문을 올렸으나 이미 전국적으로 퍼진 폭동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출처: Marianna Spring

채널3나우(Channel3 Now)는 용의자가 ‘알리 알 샤카티(Ali-Al-Shakati)’라는 이름의 무슬림, 망명 신청자이며, 배를 타고 작년에 영국으로 넘어와, 영국 정보기관 MI6의 감시 목록에 올라 있다고 거짓 주장했다. 이 근거 없는 주장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공유되면서 극단적인 반이민 및 반이슬람 정서를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사건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채널3나우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매체가 아닌, 언론사처럼 위장한 가짜뉴스 사이트임이 밝혀졌다. 카타르 노스웨스턴 대학교 미디어 애널리틱스 부교수 마크 오웬 존스(Marc Owen Jones, 2024)는 당시 유포된 수많은 게시물 가운데서도, 채널3나우의 게시물은 특히나 수천 건의 리트윗을 기록하고 허위조작정보가 폭발적으로 퍼져 나가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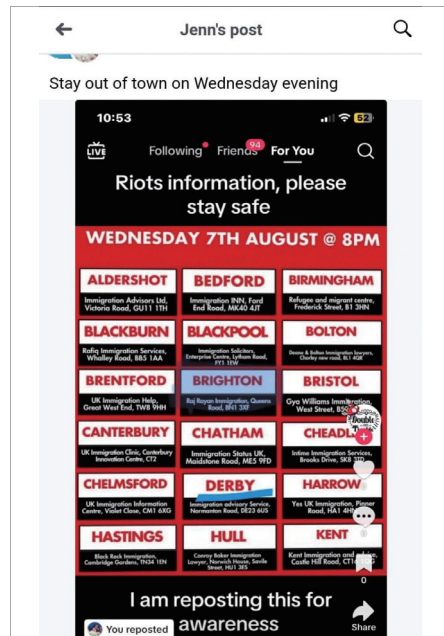
사우스포스트 공격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이 허위 이름, ‘알리 알 샤카티’는 18,000개 이상의 고유 계정에서 X에 서만 30,000건 이상의 멘션을 받았다(ISC, 2024). 필자 또한 이 당시 페이스북과 X에서 ‘알리 알 샤카티’와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 이 두 키워드를 셀 수 없이 많이 보았다. 영국 경찰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가 현재는 해체된 영국의 극우 단체 EDL(English Defence League) 지지자들로 하여금 다시 뭉쳐 폭동에 가담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BBC, 2024b).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반이민 정서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는 조직적으로 시위를 계획하고 선동하였다. 온라인 내의 분노의 담론이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다.

필자 또한 속해 있던 학교 단체 연락방에서 폭동 날짜들이 적힌 표들을 공유 받았다. 이날은 집으로 빨리 퇴근하거나 문단속을 잘하라는 메시지 또한 여러 개 받았다.



〈사진 2〉 허위조작정보가 퍼졌던 당시 가해자의 허위 이름인 Ali Al-Shakati가 소셜 미디어 X에서 영국 트렌드 검색어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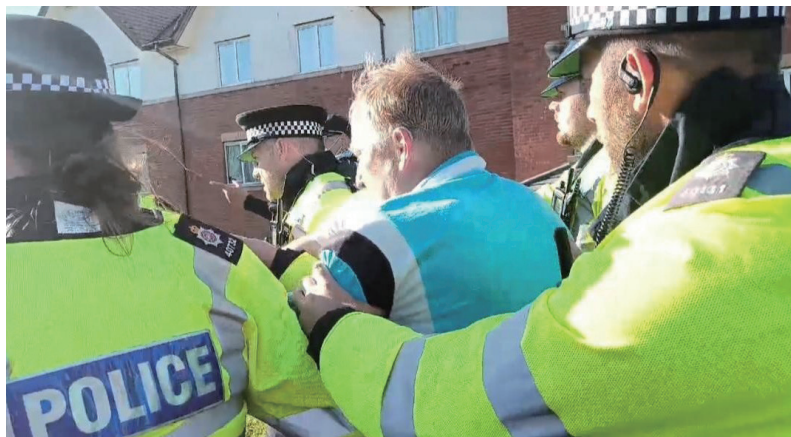
출처: X 스크린샷(ISC, 2024)



〈사진 3〉 당시 필자가 공유 받았던 폭동 정보 표들 중 하나. 각 도시별 폭동 예정 일시가 적혀있었다.

Ⅲ. 허위조작정보의 무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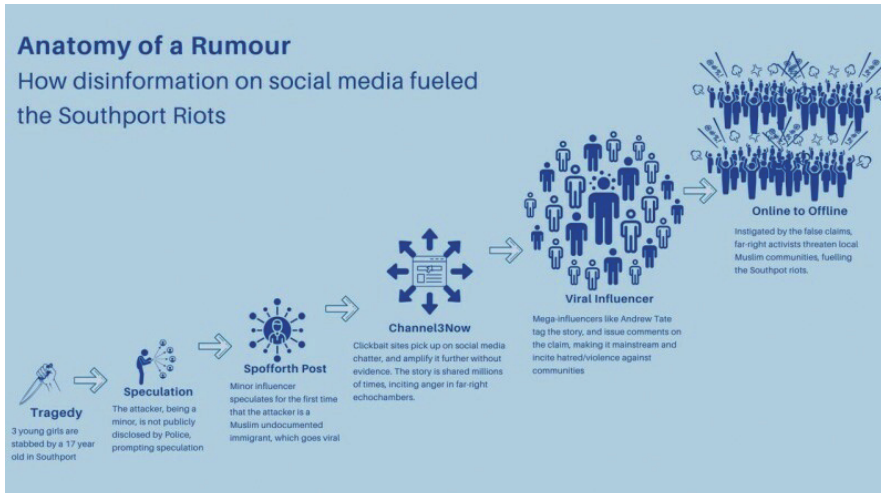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결국 영국 전역의 2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에서 무슬림 공동체, 모스크, 난민 신청자들을 겨냥한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런던 폭동 당일, 일이 있어 시내를 걸어야 했던 필자와 동료들 또한 최대한 폭동 장소를 피해 걸어도 고함과 몸싸움 소리로 단 번에 폭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런던에는 “이제 더는 용인할 수 없다”(“Enough is Enough”) 라는 슬로건으로 반이민주의 사람들이 뭉쳤고 이날만 100여 명이 체포되었다. 당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진들은 하나같이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경찰차가 불타오르며, 거리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장면들이었다. 그날, 직접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분노를 목격하며 필자와 동료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유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발언이 현실에 미치는 파급력과 그 충격적인 결과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 4〉 Crawley 시위 현장에서 폭동 가담자들을 연행해가는 경찰들. 실제 현장 사진.
출처: 필자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격해진 폭동은 전체 유색 인종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변질되었다. 정보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분노를 표출하는 폭도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무차별적인 공격과 약탈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런던 거리에서는 차량을 강제로 멈춰 세운 뒤 운전자가 영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을 열고 끌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 상점과 식료품점 또한 무차별적인 약탈의 대상이 되었으며, 도시 전역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당시 함께 거주하던 하우스메이트들 역시 국적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폭동이 장기화되거나 더욱 격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필자가 체감하기에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정말 순식간에 발생하였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를

조장한 허위조작정보는 정말 믿을 수 없이 빨리 퍼졌고 이를 발미로 조직적인 움직임이 되기 까지 이틀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사진 5〉 사우스포트 폭동을 촉발한 루머의 경로를 보여주며 허위조작정보의 사회적 파급력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Usman Azeem

Azeem(2024)의 인포그래픽은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된 허위조작정보가 어떻게 현실의 폭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준다(익명의 17세 가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 뉴스 홈페이지 형태로 공유되어 극우 단체의 폭동에 이르기까지). 결국 이렇게 온라인에서 조작된 허위 담론은 오프라인 폭력을 촉발하며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국가 폭동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경찰은 예외적인 판결로 범인 신원을 공개하였다. 실제로 악셀 루다쿠바나(Axel Rudakubana)는 17세로 카디프(Cardiff)에서 태어나고 자란 르완다 이민자의 아들로 무슬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났지만 이미 퍼진 폭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IV. 영국과 유럽연합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법과 제도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는 이번 폭동을 시위가 아닌 폭력배들의 난동(“This is not protest. It is organised, violent thuggery.”, Prime Minister, 2024) 이라 규정하며 강력한 비난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Be in no doubt: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violence will

face the full force of the law.”, Prime Minister, 2024) 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선동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폭동 발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조던 팔러(Jordan Parlour)는 망명 신청자와 난민을 수용하는 호텔을 표적으로 삼으라고 촉구한 혐의로 징역 2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어서, 타일러 케이(Tyler Kay) 또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Sky News, 2024).

한편 파키스탄에서도 허위조작정보 전파의 중심에 있었던 채널3나우 운영자, 32세 파르한 아시프(Farhan Asif)를 체포했으며(Davies, 2024), 영국 체셔(Cheshire) 출신의 55세 여성, 버나뎃 스포포스(Bernadette Spofforth) 또한 5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허위조작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구속되었다(Burnell, 2024). 그러나, 이후 두 사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면서, 허위조작정보 처벌의 어려움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허위조작정보와 이를 공유하고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법적 대응이 얼마나 복잡한 과제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물론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담론이 사회적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 사회, 특히 이주자 비율이 16%를 넘는(The migration observatory, 2024) 영국에서는 이민 문제와 사회 통합, 그리고 폭력 범죄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쌓여온 가운데,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머 영국 총리는 폭동 이후 첫 대국민 연설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약없이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라고 확실히 못 박았다.

영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허위조작정보를 비롯한 유해정보의 확산,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상의 범죄 등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이하 ‘OSA’)이다. OSA는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종합적인 법률로,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등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및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기업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법의 집행은 영국 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이 담당하며, 2025년 하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3월 현재 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며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영국 폭동 사태를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OSA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선, 오정보(Misinformation)의 경우, 제71조에 따라 ‘카테

고리 1 서비스(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플랫폼)는 자체 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허위조작정보 및 관련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대형 플랫폼이 오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더 나아가, 제152조에 따르면, 오프콤(Ofcom)은 허위조작정보 및 오정보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규제 대상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조작정보 및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통신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미디어 활용 능력(Media Literacy) 증진 의무에 기반하여 허위조작정보 대응 전략을 오프콤(Ofcom)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CHAPTER 7 COMMITTEES, RESEARCH AND REPORTS

152 Advisory committee on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 (a) how providers of regulated services should deal with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on such services,
- (b) OFCOM's exercise of the power conferred by section 77 to require information about a matter listed in Part 1 or 2 of Schedule 8, so far as relating to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and
- (c) OFCOM's exercise of their functions under section 11 of the Communications Act (duties to promote media literacy) in relation to countering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on regulated services.

〈사진 6〉 영국 오프콤(Ofcom)의 허위조작정보 및 오정보 대응을 위한 자문위원회 관련 법 조항으로 규제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 방안, 정보 요구 권한,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UK Online Safety Act(2023) p.138

영국 정부는 이러한 제도화된 규제가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번 폭동 사태를 통해 정책이 가진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은 OSA를 비롯한 영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아직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으며,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폭동 이후, 런던 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OSA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으며(Browne, 2024), 이를 인정한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OSA의 추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내각부 장관인 닉 토마스-시몬스(Nick Thomas-Symonds) 역시 OSA가 아직 완전한 시행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개정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이며, 향후 법 적용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위조작정보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영국뿐만이 아니다. 영국의 OSA에 앞서, 유럽연합(EU) 또한 기술 기업에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이하 'DSA')을 도입했다. DSA는 유럽 내에서 더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규제법으로,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대상은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며, 특히 유럽연합(EU) 내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Very Large Online Platforms)과 초대형 검색 엔진(VLOSE,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유럽연합의 DSA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며, 영국의 OSA는 보다 강력한 콘텐츠 규제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두 법 모두 온라인상의 유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규제법이지만, 각 지역의 특성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영국 오프콤(Ofcom)의 2024년 뉴스 소비 보고서에서는 영국 성인의 71%가 온라인 뉴스를 소비하고, 절반 이상(52%)이 소셜 미디어를 뉴스 소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앨런 튜링 연구소(Alan Turing Institute)의 2024년 설문조사에 영국인 10명 중 9명(94%)이 소셜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듯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소비 공간을 넘어, 허위조작정보와 오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 주요 경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규제 또한 기술적 발전과 정보 소비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V. 한국은 안전한가

한국에서는 아직 허위조작정보가 직접적인 방아쇠가 되어 전국적인 폭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2025년 1월 발생한 일명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극우 유튜버들 사이의 정보 왜곡과 선동 등이 폭력 사태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전유진, 2025).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 역시 2024년 영국 사우스포트 폭동과 같은 허위조작정보 기반의 대규모 사회적 혼란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민사적·형사적 규제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부터는 가짜뉴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하려는 법 제정 시도가 본격화되었으나 관련 규제 법안은 정권에 따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속에서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어려웠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43개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법적 규제는 사실상 전면 무산되었고 현

재까지도 자율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이숙중, 2024).

이렇듯 영국과 한국의 온라인 및 언론 규제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와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모든 사례를 완벽히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항상 뒤따른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영국 폭동 진압 당시 영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더 큰 책임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여기가 영국인가, 소련인가?”(“Is this Britain or Soviet Union?”) 라는 발언을 남겼다. 머스크는 한 발 더 나아가, 음모론자들과 나이젤 패라지(Nigel Farage) 같은 극우파 정치인들이 제기한 논란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영국 경찰이 ‘이중 기준’을 적용해, 좌파가 주도하는 시위보다 우파 시위를 더 강경하게 진압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키어 스타머 #TwoTierKeir”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영국 정부의 소셜 미디어 규제 시도를 표현의 자유 억압, 지나친 검열이라는 반응을 내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온라인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범죄이며,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경계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각국의 법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 공간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지만, 이는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동시에 법적 규제만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온라인 내에서 생성되고 공유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발언은 단순한 법적 대응만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기 규율이 필수적이다. 조작된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이 2025년 OSA 협의 조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필요성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법적 규제와 개인의 정보 판별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보다 건강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VI. 시민 사회의 힘을 보여준 맞불 시위

법적 규제와 국가적 차원의 처벌과는 별개로 폭동 이후 영국 전역에서는 반인종차별 시위가 확산되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이민 폭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필자 또한 라이브로 시위를 보던 날에 맞불 시위대의 구호인 “Refugees are welcome

here(난민을 환영한다)”라는 외침이 훨씬 더 크게 들리는 날이면 ‘오늘은 화염이나 폭동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겠구나’ 하며 안도했던 기억이 난다.



〈사진 7〉 브라이튼(Brighton)에 모인 반인종차별시위대. ‘난민을 환영한다. 극우를 멈춰라’ (‘Refugees welcome here. Stop the far-right’)라는 피켓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Zeeshan Tirmizi, Brighton&Hove News 기자

특히 브라이튼에서는 2,000여 명의 맞불시위대가 8명의 반이민 폭동 시위대를 둘러싸는 광경도 펼쳐졌다. 실제 사람들이 보여준 반인종차별 시위의 힘은 거대했던 영국 2024 폭동을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Ⅶ. 나가며

이제 온라인 공간의 허위조작정보가 그저 글로만 존재하는 시대는 지났다. 온라인상에서 퍼진 의도된 거짓정보는 그 자체로 무기가 되어 사람들의 분노를 유도하고, 사회를 갈라놓으며, 현실 세계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영국 폭동 사태에서 드러났듯, 허위조작정보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확산될 경우, 온라인에서 촉발된 분노가 거리로 옮겨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폭동이 진압된 후,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남겨진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평화롭던 동네 거리는 부서진 유리 조각과 불에 탄 자동차 잔해들로 뒤덮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갈등

과 분열은 더욱 깊어졌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을 단순한 인터넷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 그리고 비판적인 정보 분석 능력을 기르는 것만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향후 진행될 영국 OSA의 협의 및 개정 과정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 법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디지털 환경의 건전성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Al Jazeera English,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heJ5ErOTFrg>
- Azeem, U. (2024). How riots in UK's Southport expose the web of disinformation and lack of accountability. <https://www.dawn.com/news/1853301>
- BBC, (2024a). All children injured in Southport attack out of hospital, <https://www.bbc.co.uk/news/articles/c24p34l9v51o>
- BBC (2024b). Why are there riots in the UK and where are they taking place? <https://www.bbc.co.uk/news/articles/ckg55we5n3xo>
- Browne, R. (2024). Britain considers tougher internet safety laws after riots, Musk comments — what you need to know. <https://www.cnn.com/2024/08/14/uk-considers-tougher-online-safety-act-after-uk-riots-musk-comments.html>
- Burnell, P. (2024). No charge over spreading of Southport misinformation, <https://www.bbc.co.uk/news/articles/crl8nwx6ynzo>
- Channel 4 News,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Z695faCoW8&t=852s>
- Cps.gov.uk, (2023). Children as suspects and defendants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children-suspects-and-defendants>
- Davies, C. (2024). Pakistan police arrest man over Southport attack disinformation, <https://www.bbc.co.uk/news/articles/c05je6yz0q1o>
- Emine Sinmaz (2024). Why are people rioting across England and how many are involved?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article/2024/aug/05/why-people-rioting-across-england-how-many-involved>
- European Commission, (2022). The EU's Digital Services Act, [online] Available at: https://commission.europa.eu/strategy-and-policy/priorities-2019-2024/europe-fit-digital-age/digital-services-act_en [Accessed 4 Mar. 2025].
- ISD, (2024). From rumours to riots: How online misinformation fuelled violence in the aftermath of the Southport attack, https://www.isdglobal.org/digital_dispatches/from-rumours-to-riots-how-online-misinformation-fuelled-violence-in-the-aftermath-of-the-southport-attack/
- Legislation.gov.uk, (2023). Online Safety Act 202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50/contents>
- Migration Observatory, (2024). Migrants in the UK: An Overview – Migration Observatory, <https://migrationobservatory.ox.ac.uk/resources/briefings/migrants-in-the-uk-an-overview/>
- OFCOM (2024). News consumption in the UK: 2024 Research findings, [online] <https://www.ofcom.org.uk/siteassets/resources/documents/research-and-data/tv-radio-and-on-demand-research/tv-research/news/news-consumption-2024/news-consumption-in-the-uk-2024-report.pdf?v=379621>.
- Prime (2024). PM statement: 4 August 2024, [online]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tatement-4-august-2024>
- Sky News, (2024). First men jailed for riot-related social media posts, [online] <https://news.sky.com/story/jordan-parlour-facebook-user-jailed-for-riot-related-social-media-posts-13193894>
- Spring, M. (2024). The real story of the website accused of fuelling Southport riots, BBC News, <https://www.bbc.co.uk/news/articles/c5y38gjp4ygo>
- The Alan Turing Institute, (2024). More than 90% of UK population have encountered misinformation online, [online] <https://www.turing.ac.uk/news/more-90-uk-population-have-encountered-misinformation-online> [Accessed 4 Mar. 2025].
- 이숙종 (2024).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국제적 규제 추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419&board=kor_workingpaper&keyword_option=&keyword=&more=
- 전유진 (2025). 경찰은 공안, 영장판사는 화교... 혐오감 담은 '가짜뉴스'가 법원 폭동 카웠다. [online]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013270001498>



재난보도와 트라우마: 언론의 역할과 책임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

1. 들어가며

제주항공 참사는 부상자와 유가족,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재난 현장은 구조를 요하는 피해자와 가족, 소방대원, 의료진, 행정인력, 취재진 등이 뒤섞이며 극도의 혼란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동시에, 미디어와 SNS를 통해 재난의 참혹한 현상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면서 사회 전체가 집단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재난 트라우마가 단순히 물리적 거리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사회적 경험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재난보도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보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가 2차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많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작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가이드라인」(이하 트라우마 가이드라인)에서는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 재난보도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제주항공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보도를 트라우마 관점에서 분석하고, 생존자와 유가족, 언론,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재난 현장 취재와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선정적 보도와 자극적 영상

과거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난보도에서 감정적인 장면을 강조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방송 뉴스에서 사고 장면을 반복적으로 재생하거나 현장음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의 경우 처음 불이 시작되어 공장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는 CCTV 영상이 공개되었고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희생자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들었다가 불길과 폭음에 놀라며 뒷걸음질 치는 사망 직전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였다. 제주항공 참사 역시 여객기가 충돌하여 폭발하는 장면이 편집없이 송출되어 유가족과 뉴스 이용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2차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하에 방송사에서는 충돌 장면을 멈춤 처리하고 불에 탄 비행기 장면으로 전환해 보도하였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유튜브나 SNS로 확산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였다.

(2) 과도한 인터뷰와 사생활 침해

최근 고려대 연구진은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를 통해 이태원 압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화성 공장 화재에 대한 주요 미디어의 보도를 분석했다. 피해자의 재난 당시 경험이나 목격자의 사고 현장에 대한 진술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담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힘들게 회상하는 등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하는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가 19%였다. 재난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된 기사(14%), 재난 당사자나 가족의 극도의 오열이나 흥분상태를 여과없이 보도한 경우(13%)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트라우마 예방 관점에서 국내 언론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2022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이태원 참사 보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족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72.8%), ‘희생된 개인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보도 자제’(71.4%), ‘참사 영상 활용 자제’(68.5%)에 동의하였다. 재난 당사자들도 적극적으로 재난보도 준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곳곳에는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고 인터뷰 강요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게시되었다. 언제든 속보 경쟁 앞에서 자체적인 윤리 강령이나 재난보도 준칙, 트라우마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될 수 있는 만큼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재난과 위기사건에 대한 보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언론인은 이를 취재와 보도에 반영하고 자정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3) 악성 댓글과 루머의 확산

이태원 참사 이후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과 루머가 만연했는데 관련 기사에 달린 약 230만 건의 댓글 중 약 30%가 악의적 평가나 혐오표현에 해당하였다. 일부 정치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혐오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동조하는 쪽과 비난하는 쪽으로 양분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특정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면서 혐오표현을 강화한다.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퍼져 유가족협의회에서는 시민단체에 여객기 참사 관련 보도의 댓글창을 닫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2차 가해는 재난 당사자들의 트라우마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신뢰와 연결감을 회복하는 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언론에서는 혐오표현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혐오표현이 재난 당사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해야 한다. 온라인 명예훼손 및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재난 초기 책임소재 집중 보도

재난 초기, 언론 보도의 50% 이상은 책임소재 규명과 대응 비판에 집중된다. 재난은 개인의 실수나 단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정책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책임을 빠르게 규명하려는 압박 속에서 언론 보도가 성급한 비난과 단정적인 논조를 보일 때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의 근본 원인보다는 관리자나 특정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며 ‘희생양’을 찾는 방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이 언론과 대중의 과도한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슈가 사라지고, 결국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책임을 묻는 보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재난보도의 초점이 단기적인 비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언론도 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5) 현장 취재진의 트라우마

재난 당사자와 뉴스 이용자뿐 아니라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자들은 유족 취재를 가장 힘든 경험으로 손꼽았다. 충격과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현재의 심정을 물을 때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고 말한다. 이것은 도덕적 손상(moral injury)으로 업무와 자신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만으로 버티기에는 재난 현장은 너무나 가혹하다. 더구나 언론인들은 재난 업무 종사자로서 반복적으로 트라우마 현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복적인 노출은 언제고 공황장애, PTSD, 우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언론사 차원에서 언론인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취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 취재 이후 일정 기간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언론사 내부에서도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6) 회복관점 보도의 필요성

재난보도는 단순히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 피해자 보호, 공정한 책임 규명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재난보도 현황조사에 따르면 재난 당사자, 지



역 공동체, 자원봉사자 등의 회복 활동이나 구조활동에 대한 보도는 5% 미만에 그쳤다. 보도 초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회복 과정과 사회적 지원을 조명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재난 당사자를 ‘피해자’ 혹은 ‘희생자’로 머물게 하는 대신, 회복을 위한 주체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리적 회복을 돕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회복 단계별 심리적 대응 방안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될 필요가 있다.

3. 맺음말

재난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재난보도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책임 소재를 단기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하면서 재난 당사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빠르게 사그라들면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재난은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언론은 단순한 비판과 논란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 과정과 사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조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책임 추궁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를 넘어, 트라우마 예방과 회복을 고려한 언론 보도 방식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보호하며, 재난의 장기적인 영향을 다루는 보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보도를 담당하는 언론인들 역시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취재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보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난이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잊힌 존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며, 재난을 통해 얻은 교훈이 향후 더 나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국가트라우마센터 (2022).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 이나빈, 이정현, 유선영, 심민영 (2020). 재난피해자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이차 스트레스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4권 제2호, pp19-36. 참조
- 박상의, 이정현, 정유지 (2018). 미디어 노출에 의한 간접외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설문 조사 연구. <대한불안학회지>, 제14권 제2호, pp71-79. 참조
-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2권 제3호, pp411-430. 참조
- 김성용. (2020). 세월호 참사 전후 한국 성인의 우울 궤적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1호, pp11-50. 참조



언론중재위원회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1호 발간 예정

...

언론중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를 위해 <미디어와 인격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인격권>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이며 연 3회 발간(4월, 8월, 12월)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획논문 주제

〈「미디어와 인격권」 10년 특집〉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격권 보호의 쟁점



연구논문 주제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 〈미디어와 인격권〉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 전반(언론법제 관련 판례평석 포함)



응모자격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2. 관련분야 전문가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발간일

2025년 4월 15일 발간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를 참고하시거나 연구센터(02-397-3042)로 문의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